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보조비율의 계산 - WTO 논의를 중심으로 -
- OECD 각국의 국민연금 개혁동향
- 일본 지방세 부문의 개혁방향

한국조세의 이해

국제조세편

정책연구

소득·소비·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 연구 외

정책흐름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외

재정통계

국제비교자료(Ⅱ)

일천구백구십팔년 유월호

C O N T E N T S

권두 칼럼

- 2 구조조정 이후도 염려해야 한다 /張鉉俊

현안분석

- 6 보조비율의 계산 -WTO 논의를 중심으로- /朴寄白
 22 OECD 각국의 국민연금 개혁방향 /全英俊
 37 일본 지방세 부문의 개혁방향 /韓重鎬

한국포세의 이해

- 50 국제조세편 /韓道淑

정책연구

- 58 소득·소비·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 연구 /韓重鎬
 61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 /尹建永·崔英順

경제단상

- 66 합리적 소비? /우사임
 68 어느 샐러리맨의 지갑 이야기 /沈在珍

문화기행 : 이색 박물관을 찾아서

- 70 용산 전쟁기념관 /李 澹

정책모름

- 75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84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
 95 자본·외환 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 개선방안
 105 기업과세제도 개편방안

재정통계

- 113 국제비교자료(Ⅱ)

구조조정 이후도 염려해야 한다

張鉉俊 /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 국은행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8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1분기 -3.8% 성장률은 당초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합의한 목표성장률 -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의 여파가 지속된다고 볼 때 연말까지 -3%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 결과로 실업률은 계속 높아져 이제 6.7%까지 올라갔다. 내년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어두운 경제성적표는 예상했던 것이다. 따라서 갑자기 무슨 큰일난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는 잘해야 -3.1% 성장하고 실업자는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치의 신뢰도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구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하향 수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성장 전망 자체가 구조조정의 속도와 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라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상당 기간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은 분명해 보이고, 더 불안한 것은 유일한 탈출구가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관해 심각한 토론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구체적인 분야에서,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학계가 충실하게 IMF 처

방전을 구두선(口頭禪)처럼 외워 대는 반면, 외국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들간에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느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한 번 부끄럽다.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 오는 것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한 죄가 있지만 이제 처방을 놓고 또 주체성 있는 대안을 자신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괴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면한 우선과제가 구조조정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너무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구조조정 이후에 대해 다소 소홀하다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문제였다면 당연히 더 중요한 문제는 미래에 있다. 정부나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구조조정이 묘약이라고 강조하지만, 지난 시절의 낡은 체제를 부수는 데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새싹을 돋아나게 하는 데도 그런지는 알 수 없다. 구조조정이 끝나도 상당 기간 성장률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는 설비투자가 무려 41%나 줄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기나긴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난 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구조조정과 개혁은 지난 시절의 잘못된 제도와 구조를 파괴하고 잘라 내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마련이므로 구조조정을 하는 와중에서도 사회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재창조를 하고 미래의 주력산업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생존이 달려 있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설비투자를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줄고 미래의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비수요의 회복도 어렵고 투자도 안되니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출만 해도 물량 기준으로 1분기중 30%나 늘었지만 수출단가가 20%나 떨어져 실속이 없었고 그나마 금 수출을 제외하면 늘지도 못했다. 앞으로도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가 되기는 힘들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IMF 합의 이후의 충격으로 성장이 6.4%나 떨어졌다. 그나마 IMF 충격을 덜 받은 농어업과 정보통신업 때문에 그 정도의 성장률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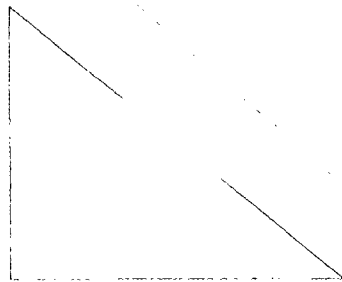
이 같은 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앞으로 몇 년은 단기적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의 순서상 구조조정이 먼저다. 이 말은 선부른 경기 확대책으로 거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를 다시 이끌 견인차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조건 고도성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지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이라든지 벤처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수익성 있는 업종으로 육성할 것인지 경제재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나긴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난 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구조조정과 개혁은 지난 시절의 잘못된 제도와 구조를 파괴하고 잘라 내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마련이므로 구조조정을 하는 와중에서도 사회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재창조를 하

고 미래의 주력산업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때늦었지만 산업연구원에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산업구조는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구상 아래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책상에서 입안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와 보다 현실성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의 명분과 실제간의 거리를 줄이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첫째, 1999년부터 5년간 민간기업이나 정부에나 모두 160조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가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대안으로는 유일하게 외자투입이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밋빛 미래나 보여주는 명분보다 실제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할 것이다. 둘째, 흔히들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지식기반사업이라고 하면 언뜻 첨단 혹은 미래산업만을 떠올리는데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부여해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신발이나 의류산업이라고 해도 신소재와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개발을 통해 얼마든지 세계적인 명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와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투자우선순위를 신기술 개발보다는 디자인 산업기반 육성에 두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이 부문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 계획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산업자원부 한 부처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기**

현안분석



1. 보조비율의 계산 - WTO 논의를 중심으로 -

朴寄白/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 OECD 각국의 국민연금 개혁동향

全瑛俊/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3. 일본 지방세 부문의 개혁방향

鞠重鎬/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보조비율의 계산

- WTO 논의를 중심으로 -



朴 寄 白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서 론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행하는 유·무형의 지원을 말한다. 민간부문에는 가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도 포함된다.

국내적으로는 보조금의 수혜대상이 적합한 것인지, 지원 수준은 적절한 것인지, 수혜대상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이지만 보조금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초점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의 결과를 낳음으로써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국제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약이 체결된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약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타국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경우 피해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손상의 기준을 보조금액이 물품가액의 5%를 초과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므로 보조금의 성질이나 유형에 따라 보조가액을 다르게 계산해야 하고, 보조금과 관련되는 물품가액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파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WTO의 보조금위원회는 1995년 하반기부터 비공식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보조금 계산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의 결과를 낳음으로써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국제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조금 계산에 있어서의 쟁점과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보조금 액의 계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권고안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는 데 있다.

II. 본 론

1. 정의 및 분류

가. 정의

WTO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financial contribution)을 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정부의 직접적 자금이전(예 : 교부금, 대출, 지분 참여) ② 잠재적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예 : 대출보증 등) ③ 정부 세입의 포기(예 : 세액공제와 같은 유인책)¹⁾ ④ 정부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구매(일반 사회간접시설 제외) ⑤ 모든 형태의 소득 및 가격지원 ⑥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기관의 보조(자금 공여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권한을 위임하거나 혹은 감독함으로써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 규정된다.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혜자가 혜택을 받고, 해당 보조금에 특정성이 있는 경우이다. 동 협약은 정부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와 정부의 재정적 손실이 없더라도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를 보조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부의 재정적 손실 유무가 아니라 수혜자의 혜택 여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수혜자의 혜택이 아닌 정부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정성은 사전적 특정성과 사후적 특정성으로 구분되는데 사전적 특정성의 예로는 공여기관이나 관련 법률이 보조금 수혜자의 범위, 비율 등을 제한할 경우나 특정지역 내 위치하는 모든

1)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나 조세를 면제하거나 납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조세환급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업에 보조금이 제공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후적 특정성의 예로는 사전적으로 특정성을 띠지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만이 해당 보조금을 향유하거나 보조금 수혜에 있어서 불평등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보조금의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성을 갖지 않으면 비록 보조금이 타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여도 쌍무간 또는 다자간 채널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 분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약은 보조금을 허용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무역왜곡 효과가 큰 수입대체보조금에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협정체결 이전의 보조금도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상계가능보조금은 타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보조금을 말한다. 정부 보조금 지급이 상품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산업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반복적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 직접적으로 채무감면을 해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국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제소할 수 있고, 타국의 산업에 불리한 효과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피제소국에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과 관련한 분쟁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허용보조금에는 특정성을 띠지 않는 보조금과 특정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있다. 특정성을 갖는 경우에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부문은 허용되지만 시행 이전에 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내용이 규정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은 산업연구의 경우 소요비용의 75%, 기초개발활동의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개발 보조금은 일반적 계획에 의한 낙후지역의 개발일 경우 허용되며 특정성이 없어야 한다. 환경관련 보조금은 법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환경요건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설비를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 보조비율 계산과 문제점

가. 일반적 규정

협정에 따르면 보조비율이 물품가액의 5%를 상회하는 보조금은 타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보조비율의 계산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두 가지로,
 첫째는 정부의 비용을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물품가액은 직전 12개월 동안의 판매가액의 합으로 한다는 것이다.

입히는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비율의 계산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두 가지로, 첫째는 정부의 비용을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물품가액은 직전 12개월 동안의 판매가액의 합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 관련 보조금의 물품가액은 조세관련 조치가 취해진 회계연도에 해당 기업이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창업단계(start-up situation)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의 한도를 총투자금액의 15%로 하고 있다. 창업단계는 생산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제품개발 또는 생산설비를 위한 자금 투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창업기간(start-up period)은 생산 1차연도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물가변동이 심한 국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 물가가 급등하는 국가의 경우 물품가액은 직전연도의 수혜기업의 총판매가액을 보조금이 지급된 월 이전의 12개월 동안의 물가 상승률로 조정(indexed)하도록 하고 있다.

나. 주요 쟁점

1) 장·단기 보조금

보조의 효과가 단년도에 한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므로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장기간(1년 이상)에 걸쳐 효력이 나타나는 보조금(배분보조금, allocating)과 단기간(1년 이하)에 걸쳐 효력이 나타나는 보조금(일시보조금, expensing)으로 보조금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배분보조금은 보조금이 지급된 연도에는 보조비율이 과다계상되고 이후 연도에는 보조금이 계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모든 보조금을 단년도 기준으로 평가하면 장기보조금의 경우 심각한 손상이 1년 이상 지속되어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고, 일시보조금으로 취급하여 보조비율이 과다계상된다면 심각한 손상 기준의 정당성이 문제 시된다. 또한 WTO 협정 이후의 보조금에 대하여 배분의 가능성을 없앤다면 협정 이전과 이후

의 보조금 취급에 있어서 일관성을 잃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협정 부속서 제Ⅳ장 제7조는 WTO 협정 이전의 보조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보조금이 배분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반면에 모든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보조금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을 미치는 기한도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2) 정부비용

보조금액은 정부의 비용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자금조달 방식에는 조세 또는 차입이 있으므로 조달방식에 따라 해당 비용을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원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명시적(화폐적) 비용만을 포함시키자는 주장과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기회비용과 과세에 대한 간접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보조금의 비용을 재원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총재원의 가중평균 비용을 계산하여 모든 보조금에 적용하는 방식도 제기되었다. 정부 회계에서는 세출과 세입을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정부지출의 재원이 차입인지 과세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여 보조금의 재원과 관계없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단계의 정부가 포함되는 등 자료의 가용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정부의 세정비용 추정, 정부 발행 증권에 대한 이자율의 다양성 등이 문제가 된다.

배분되는 보조금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의 대립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배분되는 기간에 화폐가 시점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배분된 화폐에 대한 가치는 시점별로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 배분기간에 걸쳐 동일한 액수로 배분된 것으로 가정하면 최종 연도의 보조금은 현재가치가 낮아져 보조금액의 비율이 과소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할인율의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년 후에 발생하는 효과나 3년 후에 발생한 효과에 관계없이 정부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부의 비용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만 발생하며 정부의 기회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보조금액을 정부의 비용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협정의 취지와는 달리 수혜자의 혜택을 분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물가지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합한 물가지수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물가조정을 하는 국가의 경우 다수의 물가지수를 발표하지만 모든 나라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한 물가지수, 예를 들어 생산자물가지수만으로 물가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

보조금액은 정부의 비용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명시적(화폐적) 비용만을 포함시키자는 주장과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기회비용과 과세에 대한 간접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보조금액과 판매금액에 서로 다른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교부금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연계되어 있고 생산된 재화가 소비자인 경우 보조금액에는 자본재에 대한 물가지수를 사용하고, 판매금액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4) 판매액의 기준연도

판매가격의 기준연도를 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먼저 판매와 보조금 지급 시점간에 시차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한 개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와는 달리 다수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직전연도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방식이 제기되었다.

먼저 보조금마다 별도의 판매가격을 택하는 독립 판매가격 방식이 있다. 이는 특정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의 직전연도 판매가격을 해당 보조금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하고 배분되는 기간의 판매가격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조금의 숫자만큼 판매가격이 존재하며, 개별 보조금에 대한 보조비율을 합산함으로써 전체 보조비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연도가 서로 상이한 판매가격이 사용되는 문제점과 판매가 증가하는 시점에는 보조비율이 과다계상되고, 판매가 감소하는 시점에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른 방법으로 가장 늦게 지급된 보조금의 직전연도 판매가격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두번째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에는 첫번째 보조금의 직전연도 판매가격을 계속 사용하고, 두번째 보조금이 지급되면 직전연도의 보조금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하여 세번째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판매가격의 증감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계상 문제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지급 연도와 관계없이 직전연도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현재 이 방법이 권고되고 있다.

5) 산업/기업 기준

심각한 손상의 기준을 산업으로 하느냐 또는 기업으로 하느냐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협정에서 산출물에 대한 보조비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별기업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보조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손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 5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4개 기업은 5% 이하의 보조를, 1개 기업은 5% 이상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5% 이하이므로 심각한 손상을 주는 보조금에서 제외된다.

반면 개별기업 기준을 지지하는 측은 협정에서 보조금을 기업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로 지적한 가격인하 등도 개별기업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위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산업 전체로는 5% 이하의 보조이지만 특정 소규모 기업이 5% 이상의 보조를 받음으로써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전체가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권고안

가. 보조금의 구분과 배분 기간

권고안에 따르면 보조금은 성격에 따라 일시적 보조금과 배분되는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고정자산 구입용 보조금, 비반복적이고 대규모인 보조금²⁾, 향후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분을 구성하는 보조금, 수혜기업의 회계장부에서 이월되는 보조금,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과 비반복적인 보조금은 배분되는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자산의 평균적인 사용 수명을 기준으로 배분기간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기간의 운영자산(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 제외)에 대한 평균 장부가액을 해당 기간의 연평균 감가상각 비용으로 나눔으로써 평균적인 내용연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평균자산가치가 1천달러이고 연평균 감가상각이 100달러이면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자산재평가를 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산의 진정한 경제적 연한을 반영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관련 자료보다는 기업의 회계자료를 사용하여 자산의 내용연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³⁾. 장기 대출과 지분 참여를 제외한 모든 운영자산은 유형에 관계없이 내용연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⁴⁾. 또한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운영 상태를 반영하도록 하고, 특정 연도의 예외적인 상황에 의한 왜곡

2) 대규모 보조금은 성격상 배분되는 보조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해당 보조금이 수혜기업에 1년 이상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보조금은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여타 자금이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소규모 반복적인 보조금은 향후 생산보다는 현재의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지분을 구성하거나 이월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일시보조금으로 취급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보조금은 성격에 따라 일시적 보조금과 배분되는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자산의 평균적인 사용 수명을 기준으로 배분기간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기간의 운영자산에 대한 평균 장부가액을 해당 기간의 연평균 감가상각 비용으로 나눔으로써 평균적인 내용연수를 계산한다.

〈표 1〉 일시보조금과 배분보조금의 구분

	일시보조금(expense)	배분보조금(allocate)
교부금(grants)	고정자산 제외 반복적/소규모	고정자산 구입 비반복적/대규모
조세감면, 환급, 관세감면	운영경비 직접세와 관련된 혜택	고정자산과 관련된 목적 (예: 기계 관련 관세/간접세 감면)
재화와 용역의 제공	서비스/비내구재	고정자산 또는 인프라 (일반적인 인프라 제외)
연구개발	배분이 불가능한 비용	배분 추정 가능
손실 보전/운영비용 (operating costs)	반복적/소규모	비반복적/대규모 생산 이전 혜택
이자보조	용자 상환금이 만기시 지급되는 보조금	이자를 상쇄하도록 일괄 지급되는 보조금
대출 혜택	단기	장기
		장기부채의 탕감/인수 forgiveness/assumption
		지분 참여 (equity infusion)
	수출 환급금(rebates) 수출 보험 수출 진흥 지원	
	redundancy payments/ 조기퇴직/ 근로자 지원	
	근로자 훈련	
	가격 지원금	
	소액지원금 (판매액의 0.5% 이하)	

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나. 물가상승과 이자율 조정

정부비용 계산에 있어서 재원의 가중평균 비용이나 정부의 기회비용, 간접적 과세비용 등의 관점을 버리고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이 보조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실질이자율의 일부를 포함함으로써 정부의 기회비용을 일부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조정계수는 물가상승분에 물가상승률과 정부차입 이자율 차의 2분의 1을 더한 수치를 사용한다.⁵⁾

$$\text{조정계수} = \text{물가상승률} + (\text{차입 이자율} - \text{물가상승률}) / 2$$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자부문은 고려하지 않고 물가상승률만을 조정계수로 사용한다.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은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준은 배분기간중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연도를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재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가지수는 생산된 재화가 소비재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중간재이면 자본재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등 사안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차입이자율은 보조금이 배분되는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정부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증권의 만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채권의 수익률에 대한 정보원으로 Reuters, Bloomberg나 Moody's International Manual, IMF의 GFSY를 사용할 수 있다.

고물가 국가⁶⁾의 경우에도 보조금액에 대한 물가조정을 하여야 한다. 물가가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매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밖에 보조금액과 판매가액 모두를 안정적인 통화로 환산(예: 달러 기준)하거나 통화바스켓(예: 구매력평가지수나 OECD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판매가액

물품가액은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판매가액으로 한다. 물가상승이 심한 국가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판매가액도 물가조정을 한다. 다만 조세관련 보조금은 조세지원이 행해진 회계연도의 판매가액과 조세지원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시차가 없다(납세자료를 작성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연말에 실시되는 할인, 환급 등으로 판매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직전 12개월은 직전 결산연도(accounting year)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판매가

3) 이러한 자료가 유용하지 않으면 동일 국가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여타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동일 업종(국제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있는 기업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타 국가의 기업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4)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사용한다. 지분 참여의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정부의 초과지급액을 보조금으로 계산한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보조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보조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투자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기한이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전기간중 발생한 정부비용

정부비용 계산에 있어서 재원의 가중평균 비용이나 정부의 기회비용, 간접적 과세비용 등의 관점을 버리고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이 보조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실질이자율의 일부를 포함함으로써 정부의 기회비용을 일부 고려한다.

액은 총판매가 아닌 순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배분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매년 직전연도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조금의 과다·과소계상 소지를 없애고 있다. 이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의 의미를 배분되는 시점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1996년에 제공된 보조금이 10년간 배분되는 경우, 1996년도 보조비율 계산시에는 직전연도인 1995년의 판매액을 사용하고, 1999년도에는 1998년도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정 산출물의 판매가액 대비 보조금 계산은 산업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보조금 공여자가 보조금의 지급 이전에 사용용도, 즉 특정 산출물의 생산에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보조금이 특정 산출물과 연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총판매액이 아닌 해당 산출물의 판매액이 판매가액이 된다. 특정 기업이 연계보조금과 비연계보조금을 동시에 향유할 때 연계보조금과 비연계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연계된 보조금은 특정 산출물의 판매가액 대비 보조율을 계산하고, 연계되지 않은 보조금은 전체 산출물의 판매가액 대비 보조율을 계산한 다음 해당 비율을 보조비율 계산시 사용한다. 그리고 창업단계에 제공된 보조금이 창업단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배분되는 경우 창업단계 이후에 해당하는 배분보조금은 심각한 손상 여부를 5%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라. 보조금별 정부비용

1) 교부금(grants)

일시 지급되는 무상교부금(outright grants)의 정부비용은 교부금의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배분되는 무상교부금(예: 대규모 교부금)은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분할지급되는 무상교부금은 각 분할지급분이 별도의 교부금으로 취급된다.

상환교부금(reimbursable grants) 중 조건부 교부금(예: 수혜자가 이익이 있을 경우 상환의 무가 발생)은 조건부 대출과 유사하게 본다. 여타 상환교부금은 단기 무이자대출로 취급되며,

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5) 대출을 제외한 모든 배분되는 보조금에 동 방식을 적용한다.

6) 고물가 국가의 판정은 해당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결정하고, 물가상승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물가상승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회계 관습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어도 월별로 물가상승 조정이 규칙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상환 전에 발생하는 상환교부금의 비용은 일반 대출에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상환될 가능성이 없는 상환성 교부금(예: 수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은 상환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무상교부금으로 취급한다. 이때 정부비용은 교부금의 액면금액에서 결론에 도달한 날까지의 상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배분기간은 해당 보조금이 무상 교부금으로 판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2) 대출(loans)

일반 대출(ordinary loans)의 정부비용은 대출이 행해진 연도의 적절한 국채이자율과 해당 대출의 실효이자율의 차이로 측정한다. 단기 정부대출(만기 1년 미만)은 동일한 만기의 단기 국채이자율과 비교하고 장기 정부대출은 동일한 만기의 장기 국채이자율과 비교한다(국채이자율이 5%, 대출이자율이 4%이면 일반대출의 비용은 1%). 이자가 면제되는 기간은 정부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적절한 국채이자율로 비용을 계산하며 계산은 1년 단위로 한다. 그리고 원금 및 이자의 이연은 추가적인 정부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

조건부 대출(contingent liability loans)은 상환 교부금과 같이 단기 무이자 대출로 취급하여 비용을 계산한다. 상환된 경우의 보조금액은 일반 대출과 같이 적절한 국채이자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정부 이자비용과 상환금액의 차이가 된다.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때에는 교부금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는 부채탕감의 경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보조금액은 대출의 액면금액에 장기 국채이자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금액을 합한 것이 된다. 그리고 배분기간은 해당 보조금이 무상 교부금으로 판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3) 금리 보조(interest rate subsidies)

금리 보조는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경우와 일괄 보조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했을 때 정부가 이자를 보조해 주거나, 이자를 보조해 주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한 이자금액을 보조금액으로 계산한다. 보조금액은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한 날에 제공되는 반복성 교부금으로 취급된다. 특정 시점에 수혜자의 이자지급을 상쇄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비반복성 교부금으로 취급된다.

4) 부채탕감과 손실보전

부채탕감 형태의 보조금에 대한 정부비용은 정부가 지출한 금액(원금 + 발생이자)으로 계산된다. 해당 금액은 부채가 탕감된 날에 받은 교부금으로 취급된다. 손실보전 형태 보조금의 비용은 손실보전액으로 계산된다. 손실보전이 다른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 해당 금액은 교부금으로 취급된다.

상환교부금 중 조건부 교부금은 조건부 대출과 유사하게 본다.

여타 상환교부금은 단기 무이자대출로 취급되며, 상환 전에 발생하는 상환교부금의 비용은 일반 대출에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5) 조세감면

조세감면 중 가속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가 세입을 포기한 연도의 보조금액을 연도별로 계산하는 방법과 감가상각 기간의 보조금액을 현재가치로 일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세제혜택을 계산하는 데 두 가지 방법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공제, 면세기간 등은 정부가 조세감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징수할 수 있었던 수입금액을 정부비용으로 계산한다. 과세이연의 경우에는 이연된 세액을 이연기간 동안 무이자대출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비용을 계산한다.

6) 지분참여(equity infusion)

수혜 기업의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지분참여의 비용은 시장가격과 정부 지불가격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정부가 시장가격 이상으로 지불하는 경우 정부비용은 초과지불금액이 되며 교부금으로 취급된다.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기로 하였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

7) 지급보증(loan/credit guarantees)⁷⁾

지급보증의 비용 계산은 정부보증제도의 자생력을 평가하는 단계와 정부의 비용을 관련 기업에 배분하는 단계를 거친다. 먼저 지급보증제도가 자생력이 없는 제도이면 정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보증제도의 자생력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정부보증제도의 재무제표가 조사된다. 최근 5년 동안 참여기업이 지불한 보증료 총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정부가 지불한 금액과 제도운영비를 합한 금액보다 적으면 자생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부비용을 관련 기업에 배분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정부보증제도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최근 5년 동안 모든 참여기업이 실제로 지불한 보증료 총액과 보증제도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 필요했을 보증료 총액의 차로 계산된다. 다음에 해당 정부비용을 조사대상 기업에 배분하는데, 보증제도하에서 보증된 총대출금액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보조

7)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증(loan guarantees)과 대출자에게 제공되는 보증(credit guarantees)을 포괄한다.

금은 그 기업이 수수료를 지불한 기간에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의보증(ad hoc guarantees, 특정 보증제도와 명시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 채무불이행 금액에서 지불 보증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8) 재화·용역의 제공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원가에 합리적 수익을 가산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광범하게 사용되는 투입물(예: 전기, 물,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특정 고객에게 실제로 부과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 '정상' 가격은 가격표(price schedule) 또는 여타 고객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상' 가격은 보통 재화, 용역을 제공할 때의 비용(적정 수익 포함)을 복구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정부비용은 '정상' 가격과 실제 부과 가격의 차이로 계산한다. 가격차별이 비용 차이에 따른 것이라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표준가격표에 비추어볼 때, 특정 고객에게 부과되는 가격이 불균형적으로 낮은 경우에만 비용이 발생한다.

9) 기타

정부가 재화 구입시 적정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비용은 초과지불금으로 하며 교부금처럼 취급한다.

법정부담금의 인수는 퇴직수당, 기타 법적으로 요구되는 노무비용, 환경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을 포괄한다. 법정부담금의 인수비용은 보조로 볼 수 있는 금액에 한정되며 해당 금액은 교부금으로 취급된다.

수출신용보험, 수출진흥, 기타 수출 관련 보조금의 비용은 제공되는 보조 형태에 따라 계산된다. 다중환율제도의 비용은 실제로 적용된 환율과 시장환율이나 기타 국제기관에서 발간되는 적절한 기준환율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비용은 실제 적용환율을 적용한 경우의 거래액과 기준환율을 적용한 경우의 거래액의 차이이며 교부금으로 취급된다.

연구개발 보조금 비용은 제공되는 보조 형태에 따라 계산된다. 연구개발 활동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수혜기업의 향후 총매출액에 배분될 수 있다.

정부보조 또는 정부제공 근로자 훈련은 기업이 근로자를 훈련시킬 법적 의무(예: 일시해고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비용이 발생한다.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정부비용은 근로자 훈련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며 교부금으로 취급한다.

수출신용보험, 수출진흥, 기타 수출 관련 보조금의 비용은 제공되는 보조 형태에 따라 계산된다. 다중환율제도의 비용은 실제로 적용된 환율과 시장환율이나 기타 국제기관에서 발견되는 적절한 기준환율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마. 예시

1) 특정 기업에 1천만원을 무상지원한 경우

소규모 지원이므로 일시보조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원이 실시된 연도를 1997년으로 가정한다면, 직전연도인 1996년도 결산에 나타난 매출 규모가 판매가액이 된다. 1996년 매출규모를 100억원이라고 하면 보조비율은 0.1%가 된다.

2) 특정 기업에 10억원을 무상지원한 경우

대규모 지원이므로 배분보조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계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자산의 장부가액이 1천억원이고, 연평균 감가상각이 100억원이면 내용연수는 10년이 되므로 매년 1억원씩 배분되는 것으로 본다. 1997년에 무상지원되었다면 1997년의 경우에는 1996년도 매출액과 1억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을 계산한다. 1998년의 경우에는 1997년도 매출액과 1억원에 조정계수(물가상승률과 차입이자율의 평균)를 곱한 금액으로 보조비율을 계산한다.

3) 기계 구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지원이므로 배분보조금에 해당한다. 조세감면이므로 보조금액과 판매액의 계산은 과세자료를 작성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997년에 기계를 구입하였고, 1997년 12월에 결산한다면, 납세자료의 작성은 1998년도에 하므로 1997년분 판매액과 세금공제액이 기준이 된다. 내용연수의 계산은 해당 자산(기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기계의 구입가격이 100억원이고, 감가상각이 10억원이면 내용연수가 10년이므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배분된다. 세액공제율이 10%이면 1997년도 세액공제는 10억원이 되고, 해당 금액은 10년간 배분된다. 1997년도 판매액이 100억이라면 보조금액은 1억원이므로 보조비율은 1%가 되고 1998년도 이후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액과 1억원에 조정계수를 곱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을 계산한다.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인 1997년도의 자본채 물가상승률이 4%, 차입이자율이 6%라면 조정계수는 1998년 1.05, 1999년에는 1.05의 적용이 된다(복리 계

산, 물가 및 이자율 변화가 없을 경우).

III. 결론 및 시사점

보조금의 계산에 대한 비공식전문가그룹의 권고안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협정에 동의하였고, 새로운 논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손상의 기준(판매가액의 5%)을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배분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못하다. 보조비율의 계산시 판매가액은 사실상 물가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분보조금에 실질이자율의 일부를 가산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규정에 따라 정부의 비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부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므로 이자비용이 감안되어야 한다. 또한 배분되는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내구자산에 대한 보조금이므로 해당 재화의 물가지수의 증가율이 판매액(판매량 * 물가상승률)에 적용되는 소비자 또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증가율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지원제도(10% 세액공제)와 동일한 판매량을 유지하는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비율의 변화가 없어야 하나 보조금에 적용되는 조정계수와 판매액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간의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보조비율이 변하는 문제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및 외환위기로 인한 판매 부진,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의 증가가 보조비율을 높여 제소의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특히, 1998년도 판매액, 고금리, 고물가가 적용되는 1999년도 보조비율(조세지원의 경우에는 1998년도분 보조금)이 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우선 판매액이 경기침체로 축소되어 보조비율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내수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쟁의 주요대상이 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율 인상으로 인해 판매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심각성이 내수 위주 기업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이 증가하여 조정계수가 커짐으로써 보조비율이 높아질 위험성도 있다. 1998년도 금리수준은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실질이자율로 나타난다. 반면 보조비율 계산시 분모인 판매액에도 물가증가률이 사실상 포함되고 있으며 적용되는 물가지수도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물가를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

제소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권고안의 체계 내에서 제소의 가능성을 낮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999년도에 지급되기 시작할 배분보조금은 일시보조금 방식으로 전환(예: 장기대출

재소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권고안의 체계 내에서 재소의 가능성을 낮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999년도에 지급되기 시작할 배분보조금은 일시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금융,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비율 계산상의 특례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혜택을 단기대출혜택으로 전환하여 반복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전부터 배분되는 보조금에는 효과가 없다. 조정계수에 사용되는 금리의 기준이 동일한 만기를 가진 정부 발행 증권의 만기금리이므로 장기채권의 금리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가능한 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판매액과 보조금액을 달러로 환산하는 방법 등 보조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금융,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비율 계산상의 특례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한 보조비율의 일시적 변화는 예외로 취급하자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보조제도, 보조수준에 구조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보조비율이 변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분기간을 결정할 때도 정상적인 기업운영 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년도 자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예외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년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특례적용 대상의 기준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조비율의 계산은 기업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로 인하여 전체 보조프로그램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은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매출액에 비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P**

OECD 각국의 국민연금 개혁동향



全 瑛 俊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서 론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은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되어 왔다.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적어도 일부의 국민들에게 공적연금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대체적으로 1970대 초반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오일쇼크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연금급여율을 높이고 적용대상을 넓히는 추세를 보여 왔다.

공적연금에 의한 재정지출, 특히 노령연금급여는 이들 국가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령연금의 지출이 GDP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6~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국가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노년층 빈곤의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연금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이들 국가에서는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국가재정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혁이 요청되고 있으며 상당부분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기대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의 하락에 의한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 및 고용 여건의 변화 그리고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여건변화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제정의 위기와 근로자의 조기은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연금재정의 위기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에도 닥칠 것으로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의 노후생계보장 수단은 크게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으로 대별된다. 공적연금은 다시 균등률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연금에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과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각국의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제도와 그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의 제1항에서는 OECD 각국의 노후생계보장 수단에 대해 살펴보고, 제2항에서는 각국이 직면한 경제여건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3항에서는 최근 각국의 연금개혁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각국의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OECD 각국의 노후생계보장 수단의 특성

각국의 노후생계보장 수단은 크게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으로 대별된다. 공적연금은 다시 균등률연금(flat-rate pension)과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연금에는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과 개인연금(personal pension)이 있다. 균등률연금은 노년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으로 연금급여 자격요건은 연령, 해당국가에서의 거주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우에 따라 소득 및 자산을 근거로 결정되는 경우(means-test)도 있으며 그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은 연금보험료 혹은 정부의 일반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은 주로 연금보험료에 의해 그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노후에 충분한 생계보장 수단을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 균등률연금

OECD에 가입한 25개국에 모두 균등률연금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각

국의 여건에 따라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① 재원은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조달되나 여타 사회보장체계와는 분리되어 있고 연금급여 자격은 means-test에 의해 결정되며 일정기간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호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등)
- ② 재원은 연금보험료에 의해 조달되나 연금급여 지급조건으로 일정 의무거주기간을 두고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규정이나 means-test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덴마크를 제외한 북구유럽국가와 네덜란드 등)
- ③ 균등률연금을 기초연금(basic pension)으로 지칭하고 연금급여 조건으로 일정기간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두고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의 거주요건이나 means-test를 연금급여의 근거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아일랜드, 영국, 일본)

또한 위의 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연금으로 사회적 연금(social pension)이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적연금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보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많은 경우 65세이고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연금재원조달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금급여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연금재정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경우가 많다.

나. 소득비례연금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가에 소득비례연금이 존재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균등분 연금제도와 상이한 발전과정을 거쳤다. 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특정 업종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연금제도가 적용되다가 점점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노년층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서는 균등률연금이나 공적부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다수 국가에서 남성의 경우 65세로 규정하고 있다(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수급 개시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도 있으며(체코 공화국, 헝가리 등), 일부 67세인 국가도 있다(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또한 약 3분의 1 가량의 국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상이하다(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여도 부분적으로라도 고용상태에 있으면 연금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체코 공화국, 핀란드, 스페인),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OECD 회원국들 중 전국민에 대해 소득비례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나라는 드물다는 것이다.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이 지급되는 국가도 있다(미국). 다만 이 경우 연금급여 수준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OECD 회원국들 중 전국민에 대해 소득비례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나라는 드물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국민들에 대해서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등).

모든 나라에는 소득비례연금의 수급조건으로 최소가입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기간은 일부 국가(헝가리,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고용연수로, 여타국가들에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득비례연금 급여산식은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가입기간 그리고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비례연금의 수준이 연금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일본, 룩셈부르크), 가입기간 일부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나라도 있다(프랑스의 경우 10년, 영국의 경우 20년). 또한 가입기간을 두 단계로 나누어 연금급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은퇴직전 5~10년 기간의 평균소득과 그 이전기간의 평균소득을 함께 고려한 경우도 있다(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독일,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본연금액에 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 연금점수(pension point)를 곱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연금점수는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가입기간 그리고 연금보험금 납부액을 감안하여 정해진다.

또한 가입기간의 산정에 있어 실업기간을 제외하는 나라도 있고(캐나다), 이들 기간을 포함시키는 나라도 있다(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소득비례연금제도는 많은 경우 소득재분배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경우에 따라 연금급여의 상한선을 정해 놓거나(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 제한은 없으나 연금보험료 수준을 결정짓는 소득금액의 상한선을 두거나(체코 공화국), 소득비례 부분에 고정분을 더

하기도 한다(룩셈부르크, 스위스). 혹은 연금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선을 두는 경우(캐나다)도 있고 미국과 같이 소득구간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상이한 가중치를 두는 경우도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하락한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예로 인플레이션을(스웨덴, 미국 등) 혹은 임금상승률(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기준으로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각국의 연금제도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특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공통적인 것은 연금급여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ILO가 제시하고 있는 임금대체율¹⁾ 40%(30년 가입시)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60~80% 수준의 연금급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러한 높은 수준의 연금급여는 노년층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의의는 있을 수 있으나 연금재정을 압박하고 연금재정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과중하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 연금재정 운용방식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은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부과방식(pay-as-you-go)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금급여의 재원은 현재 노동연령층에 속하는 가입자들로 부터 징수한 연금보험료이거나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충당된다(예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보조 연금이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부과방식은 현재의 노년층에 대한 급여를 생산가능 연령기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징수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 등의 요인으로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상승한 많은 국가에서는(독일,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등) 연금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재정을 충당하지 못하여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일부 충당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금급여지출을 위한 모든 재원을 조세수입에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호주, 뉴질랜드 등).

이와 같이 부과방식은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현재 많은 국가에서 유효성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다. 따라서 부과방식을 대신하여 부분적 혹은 완전한 적립방식의 채택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적립방식은 인구의 노령화의 진전으로 연금급여 지출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내저축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²⁾.

1) 일반적으로 연금급여수준/은퇴당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2) 적립방식은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연금재정 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가입자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적립방식은 인구의 노령화의 진전으로 연금급여 지출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내저축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 민간연금

현재 OECD 각국에 민간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연금은 비교적 안전한 장기저축 수단이며, 재정운용 수단이 완전적립방식에 가까워 국내저축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연금은 정부에 의해 보장되는 공적연금 급여와 더불어 노년층 생계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간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가입이 강제적이지 않고 가입자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예외적으로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호주에서는 일정 수준의 민간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연금급여 개시연령이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에 비하여 낮고, 거의 모든 경우 연금재정 운용방식이 완전적립식이다(프랑스는 예외). 민간연금은 과거 공적연금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적연금의 재정 위기가 현안으로 등장한 최근에는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일본에서는 최근 기업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비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각국의 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화에는 ① 인구의 고령화 ② 노동시장여건 및 고용여건의 변화 ③ 가족구조의 변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최근 20년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기대수명 상승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평균을 보면 1960년대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2~3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대수명의 변화가 비교적 작은 국가로는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네덜란드가 있으며 기대수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로는 일본, 스위스를 들 수 있다³⁾. 성별로 보면 여

3)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이다.

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의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국가들은 대체적으로 2030년 경에 인구의 고령화 정도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 터키,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등의 국가도 향후 35년간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재 상대적으로 노년인구의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하나 빠른 시일 내에 고령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미래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재정추계에 의하면 2010~2030년도가 연금재정을 가장 위협하는 기간으로 보인다. 한 조사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 최소한 11개국의 연금급여 지출이 이 20년의 기간 동안 GDP 대비 3%p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연금수급 개시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특히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의 경우 연금재정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인구 노령화의 진전은 민간저축률의 하락과 이에 따른 임금률의 하락을 초래하여 연금재정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각국의 연금제도가 직면해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이다. 많은 국가의 공적연금이 연금보험금에 의해 재정이 운영되고 또한 연금급여권이 가입기간 동안의 노동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현재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노동여건의 변화의 심각성은 고실업 및 장기실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고실업·장기실업의 경향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연금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연금급여자가 급격히 증가한 동구권 국가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금가입자 입장에서는 장기실업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입자의 수가 증가하고 또한 실업기간 동안 개인저축의 탕진으로 인해 이들의 노후생계보장 수단이 매우 제한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노동여건의 또 다른 변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이동의 증대를 들 수 있다. 노동이동의 증대는 노동력 이동시 발생하는 연금수급권 보전의 문제를 야기할 것인데 최근 노동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간에 연금수급권 보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시도라고 할 것이다.

노동공급 행위의 변화는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수준의 상승에 따른 여가선호의 경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령 노동력의 생산성이 하락하여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를 해

OECD 각국에 걸쳐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중장기 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이다. 중장기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히 연금재정의 균형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금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여타 정부지출이 압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고실업이 팽배해 있는 노동시장 여건하에서 조기퇴직이 많이 발생한다는 데도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고령 남성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과는 대조적으로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하여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고 개인저축이 증대되는 상황하에서 조기퇴직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가족여건의 변화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로 인한 경제적 독립성의 제고는 이들의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어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기회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까닭에 이들 청년층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부양하는 예가 줄어들고, 오히려 노년층들이 자녀를 부양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연금수급권의 분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OECD 각국에 걸쳐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중장기 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이다. 중장기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히 연금재정의 균형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금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여타 정부지출이 압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연금재정의 부담을 미래 경제활동인구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대 간 공평성의 확보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지나치게 낮은 은퇴연령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조기은퇴의 경향은 앞 절에서도 지적한 여러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조기은퇴의 경향과 더불어 노령인구의 증가는 연금재정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노동과 은퇴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3. OECD 각국의 최근 연금개혁

위에서 지적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OECD 각국이 취한 최근 연금개혁의 주요내용은 ① 연금 내부수익률⁴⁾의 전반적인 하향 조정(연금급여의 하향 조정, 필요가입기간의 연장, 연금보험료의 상향 조정) ② 연금기금의 확대 ③ 민간연금의 육성 ④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 등의 조치로 요약될 수 있다.

연금내부수익률의 전반적인 하향 조정은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연금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 한 국가들로는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1989, 1996년도 균등률연금에 대한 means-test의 실시를 포함), 영국(소득비례연금 수준의 하향 조정), 뉴질랜드, 스웨덴, 포르투갈 등이 있다.

연금급여의 명목수준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연금의 실질가치보존을 위한 조치를 완화한 국가로 일본, 독일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독일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변화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전의 총임금변화율에 의한 실질가치보존 조치 대신 순소득임금지수를 도입한 바 있다.

직접적으로 연금급여 수준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내부수익률을 낮춘 예는 다음과 같다. 연금보험료의 인상을 통하여 내부수익률을 낮춘 나라로는 핀란드, 체코 공화국 등이 있으며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가입기간을 연장(터키, 포르투갈 등)하여 연금수급권의 획득을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연금급여 수준을 낮춘 나라도 있다. 연금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소득계산을 위한 기간을 연장하여 전반적인 연금급여 수준을 낮춘 예도 있다⁵⁾. 또한 스웨덴(1999년부터 실시 예정)에서는 연금급여 수준을 기대수명의 수준과 연동하여 계산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연금급여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연금급여 수준을 높이는 나라들도 있다. 호주, 폴란드, 체코 공화국 등의 나라들은 여타 국가들보다 낮은 연금급여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연금급여의 상향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리스와 같이 공적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도 연금급여 수준을 높이는 조치를 취한 예가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OECD 각국의 연금재정 운용은 부과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과방식에서 탈피하려는 조치를 취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소득비례 연금(Canada Pension Plan)의 재정운용방식에 적립방식의 요소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연간연금급여 지출액의 2배로 규정하던 적립기금의 수준을 5배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스웨덴은 최근 18.5%의 연금보험료 중 2% 가량의 연금보험료를 완전적

4) 연금의 내부수익률은 특정 연금가입자가 평생동안 받은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하나의 지표이다.

5) 이러한 예는 스페인(8년에서 15년으로), 프랑스(10년에서 25년 이상으로),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조치를 통하여 연금급여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과거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연도를 기준으로 연금급여를 책정할 때보다 기준이 되는 연도의 수를 늘림으로써 낮은 수준의 소득수준을 획득한 연도의 소득도 연금급여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OECD 각국이 취한 최근 연금개혁의 주요내용은, 연금 내부수익률의 전반적인 하향 조정, 연금기금의 확대, 민간연금의 육성,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 등의 조치로 요약될 수 있다.

립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적연금의 재정운용방식 변경에 대한 대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민간연금제도의 활성화이다. 헝가리, 체코 공화국,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같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의 더 이상의 확대를 억제하고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민간연금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민간연금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그 외의 국가들에는 호주, 덴마크, 멕시코,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미국 등이 있으며, 특히 공적연금 급여율이 낮은 나라에서는(캐나다, 호주, 영국 등) 낮은 연금급여율을 민간연금의 활성화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호주와 영국과 같이 민간연금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민간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한 국가도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연금기금관리회사에 대하여 고수익·고위험과 저수익·저위험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연금 육성은 민간연금기금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뉴질랜드의 경우 조세감면 대신에 공공홍보로써 민간연금을 육성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호주와 덴마크는 민간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10년 동안 민간연금 가입률이 최소한 50%p 증가하여 80~9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연금제도가 활성화된 나라들의 민간연금 가입률이 기껏해야 5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각국은 조기퇴직의 경향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공적연금급여 개시연령이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65세인데 이보다 낮은 연령에서 은퇴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평균 은퇴연령이 캐나다에서는 65세에서 62세로, 덴마크에서는 65세에서 61.5세로 낮아졌고,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60세로 하락하였다고 추산되고 있다.

조기퇴직을 줄이기 위하여 법정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되어 연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드물며 특히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 이상의 수준으로 조정할 예는 거의 없는데, 일본, 헝가리, 체코 공화국의 경우 과거 60세이던 수급 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탈리아는 현행 63세에서 2000년부터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은 향후 25년에 걸쳐 수급 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이미 67세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호주, 벨기에, 독일, 헝가리, 일본, 포르투갈, 영국 등의 나라들에서는 과거 남성에 비하여 낮게 규정되어 있던 여성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남성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스위스, 체코 공화국, 이탈리아 등에서도 최근 여성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아직 남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연금가입자들의 조기은퇴 경향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은 과거 법정 연금수급 개시연령 미만의 퇴직자에게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실업자와 조기퇴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조기퇴직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줄이는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되었다. 핀란드, 독일, 폴란드의 경우 조기퇴직자에 대한 연금급여 지급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할 바 있고 체코 공화국, 스위스, 헝가리 등은 법정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더불어 조기퇴직자에 대한 연금급여 지급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등의 경우 조기퇴직자가 연금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연금가입기간을 연장하였다. 호주, 헝가리, 스웨덴,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조기은퇴시 지급되는 연금급여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덴마크(1998년 7월부터)는 조기은퇴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이전에 재교육에 의한 노동시장 재진입 노력을 증명하게 하였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게 유도하는 조치가 취해진 예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은퇴시기를 늦춘 만큼 연금지급시 급여를 높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퇴직을 이연함으로써 상실하는 연금급여에 대해 연금급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급여수준을 그만큼 높여 줌으로써 고령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개시 최대 이연시기를 70세로 제한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핀란드, 스웨덴(1999년부터), 영국(2010년부터) 등지에서 이연시기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움직임도 있다. 퇴직 이연에 따른 연금급여의 상향 조정을 보험수리적인 계산에 의해 행하는 경우(캐나다,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가 있는 반면, 이연한 달 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핀란드, 헝가리, 독일,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호주의 경우는 퇴직 이연기간 동안 지불받지 못한 연금급여

각국의 공적연금은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 그리고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도전에 직면하여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금재정의 불건전성, 낮은 은퇴연령, 그리고 연금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이 중장기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를 연금지급 시점에서 한꺼번에 지급받게 조치하고 있다.

취업상태에서 은퇴로의 원만한 전환을 위해서 취해질 수 있는 조치로는 부분연금(partial pension)의 옵션을 주는 것이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는 덴마크, 일본, 룩셈부르크, 독일, 스웨덴 등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최근 부분연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중이며 1999년부터는 완전 폐지할 예정이다.

법정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지나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가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벨기에,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은 연금급여를 받는 동시에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거나 금지를 계획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변천에 대응하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고용관계를 일시 중지한 경우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군복무 동안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최근 이혼녀에 대해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였다.

III.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OECD 각국의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숙되어 있고, 은퇴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적연금의 실시로 인해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공적연금은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 그리고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도전에 직면하여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금재정의 불건전성, 낮은 은퇴연령, 그리고 연금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이 중장기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은 연금급여의 내부수익률 재조정(연금보험료의 인상,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용기간의 조정 등),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 조정, 조기은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민간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생계보장 수단의 다원화로 요약될 수 있다. 각국의 연금개혁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랜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한 추계에 의하면 2020~30년경에 인구부양비가 최고점에 달할 것이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현재의 연금개혁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보다 엄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개혁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정책수단간에도 상충하는 요소가 상존한다. 또한 공적 연금제도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연금제도의 기존 수혜자가 많은 까닭에 개혁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많은 정치적 걸림돌이 있다.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되었으며 1998년도 하반기에 도시지역 자영자로 연금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OECD 각국이 직면하리라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자료에서 언급한 각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근 정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 즉 연금급여율의 하향 조정 및 연금보험료율의 상향 조정,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 조정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금급여와 연금보험료율 수준의 조정은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애초 국민연금제도개선키획단이 제시한 임금 대체율 40%(40년 가입기준)를 훨씬 상회하는 55% 수준의 임금 대체율은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비록 OECD 각국이 현재 ILO 권장기준(40년 가입시 53%)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임금 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을 통하여 연금재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금급여 수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연금급여 지출을 대폭적으로 줄여 재정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여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비례분을 적용 제외하여 기업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기은퇴 방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비교적 바람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급여 수준은 특히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연금가입 기간과 비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노동공급을 위한 유인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연금급여 지출을 대폭적으로 줄여 재정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여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비례분을 적용 제외하여 기업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60세로 지나치게 낮고 또한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향후 조기은퇴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완전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더불어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되겠지만 이와 함께 완전노령연금 대비 조기노령연금의 급여수준도 조기은퇴를 방지하기 위해 다소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연금수급연령 이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을 획득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재직자노령 연금은 연금가입자에 대해 조속한 은퇴를 유인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시기를 늦춘 만큼 연금지급시 급여를 높여 주는 조치를 취한 각국의 예를 참조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은 노령근로자의 생산성 하락이다. 따라서 이들 계층의 지속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반면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자의 노동기간 연장은 소득획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고령자의 part-time job의 개발과 더불어 부분연금 적용을 통해 고령자의 안정적인 생계보장과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군복무자와 부녀자의 자녀양육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실업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이혼자의 증가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보장한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국민에 대하여 소득비례연금의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국민들에게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조치는 재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대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과약 등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소득의 역분배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많은 국가에서는 균등률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재정을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

다. 특히 균등률연금의 경우 재원을 정부수입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분리 운영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재원조달을 조세수입에서 일부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P

일본 지방세 부문의 개혁방향



韓 重 鎬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 지방의 세입과 세출

우리나라는 현재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의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맞는 재정분야 등의 조정작업도 진행시키고 있다. 중앙의 개편 또는 개혁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와 보조를 맞추어 개혁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방재정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본의 지방재정, 그 중에서도 지방세 부문의 최근 개혁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¹⁾.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개혁, 특히 지방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의 지방세 개혁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일본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의 대강을 보기로 하자²⁾. <그림 1>에서는 지방재정계획상의 세입과 세출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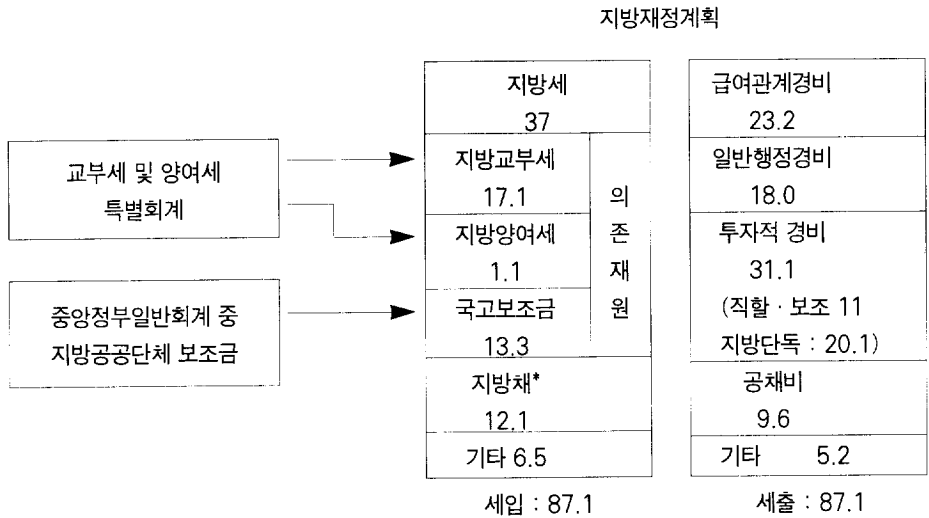
1997년 일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은 77조 4천억엔인데, 지방의 세입규모는 <그림 1>에서 보듯이 87조 1천억엔으로 10조에 정도가 많은 규모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 규모는 37조엔으로 지방의 전체세입 가운데 42.5%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입 77조 4천억엔 중에서 국세수입이 57조 8천억엔으로 74.7%를 차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³⁾. 그러나 중앙의 일반회계 세출 가운데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교부세특별회계로부터 17조 1천억엔이 지방교부세로 지출되고,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으로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1)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은 1952년에 제정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지방세법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그후 여러 차례 개혁을 거치면서 현재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재정규모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은 매년도 국가의 예산편성과 시기를 같이하여 책정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

〈그림 1〉 지방의 세입과 세출(1997)

(단위:조엔)



주 : * 지방채도 의존재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재원이라고 보다는 지방의 자체적인 의존재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취급하였음

자료 : 自治省財政局財政課, 『地方財政關係資料』, 1997.

부터 13조 3천억엔에 이르는 지방공공단체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양여세특별회계로부터 1조 1천억엔이 지방정부의 세입이 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지방공공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1997년 이들 세 항목을 합한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재원 규모는 31조 5천억엔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36.2%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방세 수입에 버금가는 큰 규모이다. 이는 곧 일본의 지방재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지방공공단체는 이상과 같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및 공채수입을 이용하여 지방공무원의 급여, 생활보호 등의 일반행정, 건설사업 등의 투자적경비, 공채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2절에서 일본 지방세 체계와 그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고, 제3절에서 지방세 부문의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4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지방세 체계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세 개혁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방재정의 수지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중앙과 지방을 통한 재정 전체의 모습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공단체의 매년도 재정운영의 지표가 된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재원의 부족액을 대상으로 재정수지의 적합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3) 중앙정부의 세입 중에는 국공채수입이 21.6%를 점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공채수입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 재정과 비교할 때 특징적으로 다른 점이라 하겠다. 지방단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국공채 의존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공채수입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방재정도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다고는 하겠으나, 우리나라보다는 지역간 세수입이 고른 편이며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II. 지방세 체계 및 그 특징

1. 개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3,280개나 되는데 우리의 광역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47개의 도부현(都道府縣)과, 우리의 시군에 해당하는 3,233개의 시정촌(市町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도 도부현세(道府縣稅)와 시정촌세(市町村稅)로 나누어져 있다.

〈표 1〉은 1997년의 일본 지방세 체계와 그 규모 및 구성비율이다.

1997년 지방세 수입의 총규모는 37조엔으로 이 중 도부현세가 16조엔(43%), 시정촌세가 21조엔(57%)으로 시정촌세의 세수입이 더 많은 구조로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세 수입은 지방의 전체세입 87조 1천억엔 가운데 4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일본의 지방세 수입이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자주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본 지방재정의 한 특징이다⁴⁾. 이는 곧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방재정도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다고는 하겠으나, 우리나라보다는 지역간 세수입이 고른 편이며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지방세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도부현세나 시정촌세에서 몇몇 세목의 기간세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조세체계가 우리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다. 세목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으며,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정외보통세도 존재하고 있다⁵⁾.

이하에서는 주요세목을 중심으로 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일본 지방세 체계의 특징에 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1997년에 행해진 재정구조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국중호, 『일본의 재정구조개혁』, 『재정포럼』, 1997년 8월호, 한국조세연구원, pp. 32~52; 石弘光(監修), 『財政構造改革白書』, 東洋經濟新報社, 1996; Cabinet Decision, "On the Promotion of Fiscal Structural Reform," June 1997을 참조하기 바란다.

4)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체수입으로서의 세외수입도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입에 관해서는 제4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1〉 일본 지방세 체계 및 세수입 현황(1997)

(단위 : 억엔,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도	보통세	139,939	87.1	시	보통세	192,622	92.0			
	도부현민세	42,280	26.3		시정촌민세	95,406	45.6			
	개인	27,684	17.2		개인	70,314	33.6			
	법인	9,178	5.7		법인	25,092	12.0			
	이자할	5,418	3.4		고정자산세	86,797	41.4			
	사업세	56,773	35.3		토지	37,232	17.8			
	개인	2,518	1.6		가옥	32,634	15.6			
	법인	54,255	33.8		상각자산	16,931	8.1			
	지방소비세	10,030	6.2		경자동차(자전차, 하차)세	1,110	0.5			
	부동산취득세	9,090	5.7		시정촌담배(소비)세	8,150	3.9			
부	도부현담배(소비)세	2,472	1.5	정	전기세·가스세	-	-			
	골프장이용세	973	0.6		광산세	20	0.0			
	특별지방소비(유흥음식등)세	1,288	0.8		목재거래세	-	-			
	자동차세	16,890	10.5		특별토지보유세	1,139	0.5			
	광구세	5	0.0		촌	법정보통세·기타	-	-		
	수렵자등록(수렵면허)세	19	0.0			목적세	16,120	7.7		
	고정자산세(특례)	119	0.1			입탕세	217	0.1		
	법정보통세·기타	-	-			사업소세	3,039	1.5		
	현	목적세	20,755			12.9	세	도시계획세	12,862	6.1
		자동차취득세	6,409			4.0		기타	2	0.0
경유거래세		14,353	8.9	구법에 의한 세수입		-		-		
기타		13	0.0	국유자산 등 소재시정촌		-		-		
구법에 의한 세수입		-	-	교부금·납부금		687		0.3		
합 계		160,714	100.0	합 계		209,429		100.0		

지방세 총계 370,143 (도부현세 : 43.4%, 시정촌세 : 56.6%)

자료: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租稅特集, 1997.

2. 도부현세 체계 및 특징

〈표 1〉에서 보듯이 도부현세의 주요 세목으로 도부현민세와 사업세를 들 수 있다. 도부현민세

5)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현재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17세목, 주민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도세는 보통세 4개 세목, 목적세 2개 세목으로, 시군세는 보통세 7개 세목, 목적세 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지방세의 세목이 도부현세 15개 세목, 시정촌세 13개 세목, 합계 28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도부현세는 도부현민세, 사업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12개 세목과 자동차거래세, 경유거래세 등 목적세 3개 세목으로 되어 있

도부현민세와 사업세를 합하면 도부현세 수입의 61.6%가 된다.

이 두 세목은 모두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득과세가 중심이라는 것이 지방세 중 도부현세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시정촌민세와 함께 주민세로 불리고 있으며, 소득과세에 속하며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 및 이자할로 구분된다⁶⁾. 이 세는 도부현세 수입의 26.3%를 차지하여 다음에 설명하는 사업세와 함께 도부현세의 기간세가 되는 세목이다.

사업세는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수익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도부현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35.3%)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세 중에서도 법인사업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인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⁷⁾.

도부현민세와 사업세를 합하면 도부현세 수입의 61.6%가 된다. 이 두 세목은 모두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득과세가 중심이라는 것이 지방세 중 도부현세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부현민세와 사업세 외에 도부현세의 소비과세로서 대표적인 세목이 지방소비세이다. 지방분권의 추진, 지역복지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소비양여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비세를 창설·시행하였다⁸⁾. 현재 지방소비세 수입은 도부현세 수입의 6.2%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일본의 지방세 개혁과 관련하여 상당히 상징성이 큰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취득세가 도부현세 수입의 5.7%,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10.5%를 차지하고 있다⁹⁾.

이상은 보통세에 관한 설명이었으나, 도로에 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동차취득세 4.0%, 경유거래세 8.9% 등 합계 12.9%가 도부현 목적세로 되어 있다.

3. 시정촌세 체계 및 특징

시정촌세 중 주요 세목으로 시정촌민세와 고정자산세를 들 수 있다. 시정촌민세는 도부현민세와 마찬가지로 시정촌 주민(법인을 포함)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로서 시정촌의 가장 중요한 세수입이 되고 있으며, 시정촌세 수입의 45.6%를 차지하고 있다¹⁰⁾. 다음으로 고정자산세는

다. 시정촌세에는 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 등 보통세 9개 세목과 입양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 4개 세목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에 대해서는 제4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6) 균등할은 균등하게 널리 부담을 지우려는 차원에서 부과하고 있고, 소득할은 주민의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에 부과되는 것이다. 또 이자할은 이자소득에 부과된다.

7) 田近榮治·油井雄二, 「法人事業税の改革」, 『税経通信』, 1997年 12月號, pp. 25~41.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의 자산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4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정촌세에서 소득과세로서의 시정촌민세와 자산과세로서의 고정자산세를 합하면 시정촌세 수입의 87%를 차지한다. 제2항에서 본 도부현세가 소득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시정촌세는 소득과세와 자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¹⁾.

이상의 보통세 이외에 시정촌 목적세로서 광천욕장의 입탕행위에 부과되는 입탕세, 도시환경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행위에 부과되는 사업소세, 도시계획사업 또는 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가지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가옥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계획세가 있다. 이 중 도시계획세가 시정촌세 수입의 6.1%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부현세와 시정촌세를 합한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자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일본 지방세 체계의 특징 요약

일본 지방세 체계의 특징은 첫째,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조세수입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 둘째, 지방세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복잡하다는 점 셋째, 도부현세의 경우 도부현민세, 사업세 등의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시정촌세의 경우 시정촌민세라는 소득과세와 고정자산세라는 자산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과세 위주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득과세 중심으로되어 있다.

III. 지방세 부문의 개혁방향

지방세 부문의 개혁방향에 관한 논의에서는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그 지역의 경제력이 상이하므로 재정력지수를 높여 간다는 관점에서도 자주재원의 확충이 중요현안이 되어 있다¹²⁾. 그리하여 지방세입에서 의존재원을 줄이고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충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방세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다¹³⁾.

앞에서 보았듯이 현재 지방의 기간세로서 도부현 수준에서는 도부현민세와 사업세를, 시정촌 수준에 있어서는 시정촌민세와 고정자산세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 도부현세 수입에서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세 부문의 개혁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

8) 소비양여세는 국세인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단체에 양여하던 것을 말한다.

9) 기타 골프장 이용세, 광구세, 수렵자등록세, 고정자산세(특례), 법정외보통세 등의 도부현세는 그 세수효과가 미미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 중 고정자산세(특례)는 본래 시정촌세이지만 대규모 공장이나 발전소가 있어 현저히 많은 고정자산세 수입을 가져오는 경우 조세의 효율적 사용을 꾀하기 위해 특례로서 도부현세로 부과하고 있는 세목이다.

10) 시정촌민세는 지방공공단체의 서비스와 지역주민의 부담을 밀접히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균등할, 소득할,

일본은 국세는 물론 지방세에서도 소득과세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자산과세가 다음으로 높고 소비과세는 그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 세제조사회의 기본적인 세제개혁 방향은 소득·소비·자산과세의 균형을 통한 효율과 형평의 조화라 할 수 있다.

업세에는 개인사업세와 법인사업세가 있는데 법인사업세가 대부분(도부현세 수입의 33.8%)을 차지하며, 앞으로 이를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가 지방세 개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세의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세원의 불안정성과 지역간의 편중문제이다. 이러한 세수의 불안정성과 지역간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방안으로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법인사업세를 소비세(또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자는 논의이다¹⁴⁾.

일본은 국세는 물론 지방세에서도 소득과세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자산과세가 다음으로 높고 소비과세는 그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 세제조사회의 기본적인 세제개혁 방향은 소득·소비·자산과세의 균형을 통한 효율과 형평의 조화라 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법인사업세의 소비세로의 전환은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되며 이는 세제조사회의 개혁방향과 합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4월의 지방소비세 창설은, 비록 소비세율 5% 중 1%p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지방세에 있어서도 본세로서 소비과세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근거는 직접세 또는 소득과세 중심의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과세베이스를 응익척도로서의 소비로 하여 세출경비 조달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다.

부연하면 지방소비세의 창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본세로서의 지방재원의 확충이라는 점이다. 도부현담배소비세나 시정촌담배소비세 등의 개별소비세가 지방의 소비과세로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소비세로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방세에서의 소비과세 확충의 서곡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사업세의 개혁논의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방양여세에 대한 영향이다. 지방소비세가 창설되기 이전에 국세인 소비세 수입액의 5분의 1로 되어 있었던 지방양여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양여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본세로서의 지방세 확충은 바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할이 있다.

- 11) 그 외 보통세로서 경자동차세, 시정촌담배소비세, 특별토지보유세 등이 있으나 그 세수가 미미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 12) 재정력지수란 지방공공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필요한 일반재원(기준재정수요액) 가운데 어느 정도가 지방단체수입(기준재정수입액)으로 마련되는가를 나타낸 비율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의 재정력이 높게 된다.
- 13) 이렇게 지방세의 확충에 따라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한 조정문제와 국고보조금의 정리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지방세입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세 또는 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 시정과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사업세를 개정하고 소비과세를 확보하는 것이 일본 지방세 개혁방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지방소비세 도입과 최근 법인사업세의 소비세(또는 부가가치세)로의 전환논의가 그 일환이라 하겠다.

한편 시정촌세로서의 고정자산세에 대해서는 국세인 상속세와는 다른 원리, 즉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편익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계속하여 지방세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지방세는 도부현 차원에서는 소비과세, 시정촌 차원에서는 자산과세에 더욱 중점을 두는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V. 한일 지방세 체계의 비교

이상 일본의 지방세 체계 및 그 특징, 그리고 개혁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일본의 지방세 개혁이 우리나라 지방세 개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세입 및 지방세 체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하자.

우선 우리나라 지방세입구조를 보기로 하자. <그림 2>에서는 1996년 우리나라 지방세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지방세입의 구성(1996)

(단위: 조원)

지방교부금 6.2	지방양여금 2.6	국고보조금 4.9	지방세 16.6	세외수입 18.3	지방채 및 기타 4.0
의존재원 14.1			지방세입 53.0		

자료: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7.

1996년 우리나라의 지방세입 53조원 가운데 지방세는 16조 6천억원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보았던 일본의 42.5%에 비하면 낮은 비중이다. 이에 비해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의존재원 규모는 14조 1천억원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외수입이 18조 3천억원으로 34.5%를 차지하여 지방세 수입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따라서 지방세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본고의 논의는 지방재정 전체의 개혁

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의 과세자주권의 확보문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4) 田近榮治·油井雄二, 「法人事業税の改革」, 『税経通信』, 1997年 12月號, pp. 25~41.

15) 税制調査會, 『これからの税制を考える』, 1997.

직접세 또는 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 시정과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사업세를 개정하고 소비과세를 확보하는 것이 일본 지방세 개혁방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지방소비세 도입과 최근 법인사업세의 소비세(또는 부가가치세)로의 전환논의가 그 일환이라 하겠다.

을 다루는 데 있어 그만큼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를 보도록 하자. <표 2>에서는 1996년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및 세수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는 도세 6개 세목과 시군세 9개 세목의 모두 15개 세

<표 2>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및 세수입 현황(1996)

(단위: 백만원,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도	보통세	7,661,905	96.1	시	보통세	8,046,590	88.4	
	취득세	3,041,241	38.1		주민세	2,147,929	23.6	
	등록세	4,053,709	50.9		재산세	532,306	5.9	
	면허세	272,304	3.4		자동차세	1,818,440	20.0	
	경주마권세	294,651	3.7		농지세	2,640	0.0	
	목적세	307,563	3.9		군	도축세	37,885	0.4
	공동시설세	239,666	3.0		담배소비세	2,254,841	24.8	
	지역개발세	67,897	0.9		세	종합토지세	1,252,549	13.8
					목적세	1,051,460	11.6	
					도시계획세	697,151	7.7	
합 계	7,969,468	100.0	사업소세	354,309	3.9			
				합 계	9,098,050	100.0		
지방세 총계(17,394,685) = 도세(45.8%) + 시군세(52.3%) + 과년도수입(327,167; 1.9%)								

주: 1. <그림 2>의 지방세액과 차이가 있는 것은 통계자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 도세에는 광역시세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도세와 광역시세의 분류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 표와 같이 도세와 시군세를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위 표는 재정경제부의 『조세개요』에 나와 있는 지방세의 세목분류에 따라 『지방세정연감』에 있는 세목을 추출하여 산출한 것이라는 데 주의를 요함.

자료: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1997.

16) 이처럼 우리나라가 일본 지방세입과 다른 것 중의 하나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는 일본에 비해 복잡하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과는 그 구성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도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취득세가 도세 수입의 38.1%, 등록세가 50.9%를 차지해 이들을 합하면 도세 수입의 89.0%를 차지하게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과 등록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자산과세에 속한다. 따라서 도세는 자산과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군세의 경우는 주민세가 시군세 수입의 23.6%, 자동차세가 20%, 담배소비세가 24.8%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3.8%를 차지하여 이 네 개의 세목을 합하면 82.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민세만이 소득과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주민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취득세,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한 자산과세 비중은 전체 지방세 수입의 48.0%에 이르고 있다¹⁷⁾. 그리고 소비과세로서의 개별소비세인 담배소비세가 전체지방세 수입의 13.0%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는 일본과는 달리 자산과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자산과세가 비록 지방세에 적합하다고는 하나 이는 곧 지방 자체의 과세베이스로서의 소득이나 소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한편 〈표 1〉은 일본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제시한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표 3〉에서는 1996년의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다시 제시하고 있다¹⁸⁾.

〈표 3〉의 일본 지방세 체계의 요약을 보면 1996년 역시 도부현세 수입의 대부분은 도부현민세와 사업세(이 두 세목이 도부현세 수입의 64.1% 차지)의 소득과세가 차지하고 있다. 시정촌세의 경우 소득과세로서 시정촌민세가 43.2%, 자산과세로서 고정자산세가 43.8%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러한 양국의 지방세 체계의 차이 및 일본의 지방세 개혁방향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지방세 개혁에 관한 시사점을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하자.

V. 요약 및 시사점

제3절에서 살펴본 일본 지방세의 개혁방향과 제4절에서 살펴본 양국 지방세 체계의 차이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17) 여기에 자동차세를 자산과세로 취급하여 자동차세까지 더하면 58.5%에 이른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자동차세를 자산과세로 취급하고 있으나 OECD에서는 이를 소비과세로 취급하고 있다.

18) 우리나라가 1996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교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도 1996년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는 도세 6개 세목과 시군세 9개 세목의 모두 15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과는 달리 자산과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자산과세가 비록 지방세에 적합하다고는 하나 이는 곧 지방 자체의 과세베이스로서의 소득이나 소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표 3〉 일본 지방세 체계 및 세수입 현황(요약)(1996)

(단위 : 억엔,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도 부 현 세	보통세	118,002	85.6	시 정 촌 세	보통세	182,809	91.4
	도부현민세	39,849	28.9		시정촌민세	86,321	43.2
	사업세	48,522	35.2		고정자산세	87,521	43.8
	부동산취득세	7,201	5.2		시정촌담배(소비)세	6,640	3.3
	자동차세	16,243	11.8		기타	2,327	1.1
	지방소비세	-	-		목적세	16,521	8.3
	도부현담배(소비)세	3,754	2.7		국유자산 등소재		
	기타	2,433	2.8		시정촌교부금·납부금	699	0.3
	목적세	19,784	14.4				
	합 계	137,786	100.0		합계	200,029	100.0

지방세 총계 337,815 (도부현세 40.8%, 시정촌세 59.2%)

- 주: 1. 도부현세 중 보통세의 기타에는 골프장이용세, 특별지방소비(유형음식·요리음식 등 소비)세, 광구세, 수렵자등록(수렵면허)세, 고정자산세(특례), 법정외보통세·기타가 포함됨.
- 2. 도부현세 중 목적세에는 자동차취득세, 경유거래세, 기타가 포함됨.
- 3. 시정촌세 중 보통세의 기타에는 경자동차(자전차, 하차)세, 전기세·가스세, 광산세, 목재거래세, 특별토지보유세, 법정외보통세·기타가 포함됨.
- 4. 시정촌세 중 목적세에는 입탕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기타가 포함됨.
- 5. 그 외 구법에 의한 세수입이 있으나 여기에는 세수입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 6. 지방소비세는 1997년 4월에 도입되었으므로 1996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위 표에는 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음.

자료: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租稅特集, 1997.

일본 지방세 부문의 개혁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지방세 구조는 소득과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부현세의 경우 사업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세 중에서도 법인사업세의 비중이 높아 법인의 사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또한 세수입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개혁방향의 골격은 도부현세에 속하

는 법인사업세를 개혁해 가면서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1997년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정촌세의 경우는 지방공공단체의 편익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정촌민세를 비롯한 소득과세와 고정자산세를 비롯한 자산과세를 위주로 하는 기본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세 개혁은 소득·소비·자산과세의 균형에 의한 효율과 형평의 달성이라고 하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제4절에서 보았듯이 일본과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자산과세가 위주로 되어 있고, 취득세,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의 자산과세를 합하면 전체 지방세 수입의 48%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득과세로서의 주민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12.3%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지방의 소득세율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소비과세인 담배소비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1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경우에도 그 개혁방향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만약 지방세 중에서 소득과세의 비중을 증대할 나날 경우, 지방에 따라 소득이라는 과세베이스가 많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우리는 충분한 세율이 될 정도의 소득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에 더해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한 것도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 나가기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일 경우는 우선 지방세원으로서의 소득확보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원칙으로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역주민의 부담이 일치하도록 하는 응익원칙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산과세가 지방세로 합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도 지방공공단체의 서비스 제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주민세는 실로 지방단체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밀접히 연계시키려는 의도로서 부과되고 있다¹⁹⁾.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세 부담의 경우 소득과세가 부족한 것은 한편으로 지방단체의 서비스가 부족한 것과는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소득과세를 확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소비과세의 경우는 기본적인 소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과세보다는 그 세율을 확보하기가 다소 용이한 형편이다²⁰⁾.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세의 개혁은 현재의 자산과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비과세의 확충을 꾀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서비스의 제공확대와 함께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 嶋津昭(編), 『圖說地方財政』, 東洋經濟新報社, 1996.

20) 앞의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소비과세로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소비세로서 지방소비세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일반소비세로서 지방소비세의 도입 여부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개혁은 현재의 자산과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비과세의 확충을 피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서비스의 제공확대와 함께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세출경비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나 지방재정 개혁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의 재정개혁방향은 적자재정의 해소를 통한 재정건전화에 두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적자재정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고령화와 소자녀화의 진행과 함께 복지비 지출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그 진행속도나 지출수준은 다르다고 해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및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차이점과 유사성을 분명히 고려한 이후에 우리에게 맞는 각 부문의 지방재정의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KIP**

한국조세의 이해

— 국제조세편

일반적으로 조세는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조세에 관한 논의는 조세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납세자의 관심은 낮거나 감정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납세자들이 우리 조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때,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본란은 일반 납세자가 우리나라 조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목별로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편집자 주>

韓道淑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WTO의 출범으로 인해 무역장벽이 허물어 지고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됨에 따라 기업활동에 있어 국경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자본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지리적 이동이 날로 용이해짐에 따라 이러한 생산요소와 기업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조세경쟁으로부터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의 가입과 함께 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를 서둘러 왔으며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증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장애의 제거 및 조세지원의 제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자본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

기 위해 국내기업 및 내국인의 해외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함으로써 국내의 자본도피(capital flight)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기업의 국내활동 및 국내기업의 해외활동과 관련된 국제조세 분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국제조세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제적 과세원칙을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의 과세체계를 관련 주요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1. 국제조세의 개념

1. 국제조세의 정의

넓은 의미에서의 국제조세는 국가간의 조세

문제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2개국 이상에서 각국의 세법체계하에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관련문제로 정의된다. 국제거래는 거래 당사자 본인이나 상대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자산의 매매 및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및 차용과 기타 거래자의 소득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¹¹⁾. 일반적으로 소비지와 세원칙에 따라 국제적으로 과세권 행사에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간접세 부문은 국제조세 논의의 중심부문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과세권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자본 및 소득과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직접세 부문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제조세는 단일세목이 아니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조세관련 문제를 총칭하며, 각국의 국제조세 관련 규정은 조세조약과 국내의 조세법체계 내에 분산되어 있다.

2. 국제적 과세원칙

각국은 조세주권에 의해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을 선택하고 법에 기초하여 각종 조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국제조세에 있어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기본원칙으로는 거주지국과

세제도와 원천지국과세제도가 있다. 거주지국과세원칙하에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전세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며 원천지국과세원칙하에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소득의 발생국에서 우선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국제조세는 단일세목이 아니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조세관련 문제를 총칭하며, 각국의 국제조세 관련 규정은 조세조약과 국내의 조세법체계 내에 분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거주지국과세제도를 택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발생한 비

거주자의 국내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원천지국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같이 대부분의 국가가 거주지국과세제도와 원천지국과세제도를 혼용함에 따라 소득의 발생지와 납세자의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동일소득에 대해 두 번 이상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이중과세는 동일소득에 대해 소득의 발생국에 대한 납세의무와 거주지국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중으로 지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 같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는 기업의 국제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원활한 자본이동과 기술이전에도 악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국가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각국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인 방법과 함께

타국과의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한 쌍무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외자도입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조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법의 정비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

II. 우리나라 국제조세 관련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제도는 다른 세목과 같은 단일세목이 아니며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목을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표 1〉 참조). 우리나라 국제조세 관련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국가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되고 있는 조세조약 ②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에서의 과세 ③ 외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거주자 및 기업의 해외와 국내에서의 과세 ④ 각국의 조세제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국가간 행정협조.

〈표 1〉 우리나라 국제조세 관련 과세체계

관련 주요법률	적용대상	내 용
조세조약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외국법인·비거주자	-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문제 - 당해 외국에서의 과세문제
	외국과 거래하는 내국법인·거주자	-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 당해 외국에서의 과세문제 -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문제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거주자·내국법인	- 다른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 과세조정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 다른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 과소자본에 대한 과세제도
	내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법인	- 다른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 과세조정
법인세법	외국법인	납세의무에 대한 규정: 과세소득·과세방법 및 절차
소득세법	비거주자	납세의무에 대한 규정: 과세소득·과세방법 및 절차
조세감면규제법	외국법인·비거주자	외국환관리법상 도입되는 외자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준비금과 법인세법에 의한 해외사업소득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외자도입법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 대가, 차관이자	외자도입법에 의해 도입되는 외자에 대한 감면

1. 조세조약(Tax Treaty)

우리나라는 조세장애의 제거를 통한 해외자원의 확보와 외자도입의 촉진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그 동안 외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 1998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49개국과의 조세조약을 통해 이중과세의 방지와 각종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표 2〉 참조).

조세조약은 양국간에 체결되며 쌍무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조세조약은 조약이 체결된 상대국에 한해 그 효력을 갖는 양국간의 조약이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OECD 가입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특수관계자간²⁾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조정 근거와 기업간의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의 조세행정의 협조규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1995년 말에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³⁾세제⁴⁾를 OECD 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고,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세제⁵⁾ 도입과 더불어 조세피난처(tax haven)⁶⁾를 이용한 조세회피 규제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이 법률의 도입을 통해 거주자의 국외소재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함에 따른 증여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세조약의 시행 및 국제적 조세행정의 협조사

〈표 2〉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현황

계 (56개국)	시행국 (49개국)	일본, 태국, 독일, 영국, 덴마크, 벨기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터키, 스리랑카, 인도, 필리핀, 룩셈부르크,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튀니지, 헝가리, 브라질, 아일랜드, 폴란드, 이탈리아, 몽골, 이집트,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 스페인, 멕시코, 피지, 체코, 불가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몰타, 파푸아뉴기니
	서명국 (4개국)	슬로바키아, 그리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서명국 (3개국)	모로코, 나이지리아, 쿠웨이트

주 : 1. 시행국 : 서명한 협약에 대해 국회비준을 받아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약이 발표된 국가

2. 서명국 : 실무대표간 합의된 협약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하여 서명한 국가

3. 가서명국 : 협약내용에 대해 양국 파세당국 실무대표간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

자료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조세조약 체결현황」, 1998. 5.

항을 신설함으로써 상호합의와 세무정보 교환을 통한 국가간의 조세징수 협조 등 조세행정 협조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조정의 근거와 기업간의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의 조세행정의 협조규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1995년 말에 공포하였다.

내원천소득을 13종류⁷⁾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과 원천징수율을 달리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내사업장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3.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을 비롯한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법인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되며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로 구분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일반 법인세 이외에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지점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외국법인에는 초과유보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된다.

4.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을 비롯한 국내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하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부의무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국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과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소득금액에 해당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소득종류별로 원천징수·분리과세된다.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5. 외국자본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외자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도입되는 자본을 가리키며 도입되는 유형에 따라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방식의 증권투자와 차관, 기술이전 등으로 나누고 있다. 국내의 자본이 열악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대부분을 외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차관도입을 통해 조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외자의 범위를 외자도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차관, 상업차관, 외국인직접투자 및 기술도입과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은행차관 도입, 외화채권 발행, 기타 해외차입,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과 무역신용 도입 등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자도입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용 대상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기술도입 대가, 차관도입과 해외차입에 대한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부분 외자도입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별세법과 조세조약에도 일부 규정되어 있다. 외자도입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 차관도입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그리고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외환관리법에 의한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투자를 통한 자유치를 위해 조세지원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확대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원의 확보와 해외시장의 개척 및 무역장벽의 회피수단으로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최근까지 장려하여 왔다. 특히 해외진출을 통한 선진기술의 국내이전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러한 해


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시 각국의 과세권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중과세와 같은 과도한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손실준비금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직접적인 감면은 상대국과의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과 같은 간접감면방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법상 해외진출기업의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은 수출사업에 대한 지원, 해외사업에 대한 지원,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수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사장개척준비금,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간접세 면제제도 등이 있으며 해외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해외사업소득공제, 해외사업손실준비금,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과 간주의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그리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제도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손실준비금은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직접적인 감면은 상대국과의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과 같은 간접

감면방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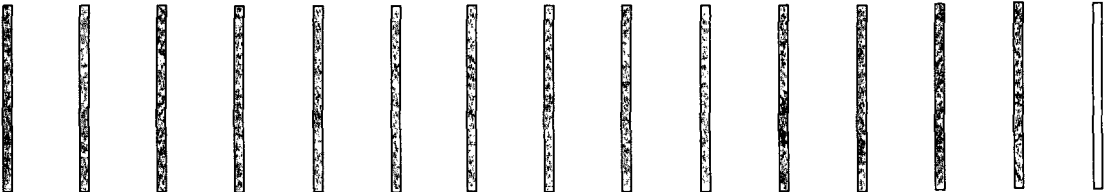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
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신림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 1) 국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①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의 결정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결정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③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3) 국제거래에서의 이전가격이란 국경을 넘어 해외의 특수관계기업간에 원자재·제품 및 서비스 수수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 4)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기업의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조세회피의 의도를 불문하고 조작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간의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에 따라 국제적인 조세회피 방지를 통해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5) 과소자본세제는 해외자회사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회사가 소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모회사로부터의 출자는 적게 받고 대신 과도한 차입을 통해 자회사 소재국의 세부담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 6)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저율과세 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세회피 및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조세피난처의 대부분은 세제혜택 이외에도 거래에 대한 비밀보장과 외환거래의 자유 등을 제공하고 있다.
- 7)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19조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을 다음과 같이 1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자소득,



정책흐름

1.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2.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
3. 자본·외환 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 개선방안
4. 기업과세제도 개편방안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에서 5월 30일에 발표한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의 전문입니다.

- 5월 29일(금) 16:00부터 한국조세연구원 회의실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에서는 박종기 총괄분과위원장 등 분과위원들이 참석하여 「1998년 세제개편 추진방안」 중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가졌음.

○ 주요 내용

-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과세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가칭)을 제정하여 모든 조세감면 규정 및 중과세 규정을 단일법으로 흡수
- 조세감면의 기득권화 방지를 위하여 개별 조세지원 제도별로 적용시한(1년, 2년, 5년, 기타)을 두는 일몰제를 도입
- 새로운 조세감면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사후평가의무화제도를 도입
- 기업 구조조정 촉진 지원을 위한 단기적 세법 개정사

- 항 및 중장기적 제도 개선 검토사항 논의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 금년에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용사례 연구, 감면통계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조세지출 범위 확정 등 제도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에 주력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추진

I.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1. 운영 현황

- 조세감면규제법 운영 경과
- 제정 초기(1965. 12. 제정)에는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위주로 운영
- * 1977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의 연계 운영을 위해 5년 단위의 한시법 체제로 전환
- 1982년 이후 산업경쟁력 강화 등 기능별 지원체제로

전환

* 현재 12개 분야에 걸쳐 106종의 조세지원제도 운영

○ 내국세 감면실적

- 1997년 내국세 감면실적은 약 3조원으로 전체 내국세의 5.5% 차지
- 통계에 누락되는 일부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포함할 경우 실제 감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
- 통계작성방법 개선은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

○ 조세감면의 규제 및 사후관리

-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부담은 하도록 최저한세(minimum tax) 및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제(ceiling) 운영
- 최저한세 : 법인은 과세표준의 12~15%, 개인은 세액의 40%
- 양도세감면 종합한도 : 매년 1~3억원(법인은 세액의 50%)
-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사내 유보의무화 :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2. 개편 필요성

○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시한이 1998년말로 만료

-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 만료를 계기로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 필요

- 최근 저성장에 따른 세수감소와 실업대책비 등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 증가 예상
-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과세저변(tax base) 확대 필요성 제기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 1999년부터 부분적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추진
- 준비단계로 모든 조세감면을 통합 규정하는 법률과 개별 감면에 대한 일몰조항 및 사전·사후관리 강화 장치 마련 필요

○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조세지원체계 확립

-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단순·실효성 있는 체계로 개편

○ 농어촌특별세 폐지에 따른 보완

- 조세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흡수방침에 따라 상응하는 조세감면을 축소조치 불가피

3. 개편 기본방향

○ 단기적인 조세감면 축소보다는 조세지원의 실효성

-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과세저변 확대 추진
-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조세감면을 일시에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양
- 일정 기간동안 가급적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하면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뒤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감축

- 조세감면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개별세법과 일반법률의 조세감면규정 및 중과세·규제조항을 흡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
 - 조세감면의 한시성 확보(일몰조항 도입)
 - 조세감면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 경제정책 운용방향과의 조화
 -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제도의 강화 등
- 단순화된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수요자 편의 제공
 - 중첩되고 복잡한 지원제도를 최대한 단순화
 - *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가칭)을 새로 제정

- 임대주택의 요건을 임대주택법 규정을 단순 인용
- 개별세법의 조세감면규정도 성격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문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예 : 법인세법상 손해배상충당금 또는 손해배상준비금
- 개별세법의 중과세·규제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흡수
 - 예 :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입법 편의상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사항은 개별세법으로 이관
 - 예 : 국외교육비 소득공제(조감법→소득세법)

4. 주요 개편(안)

가. 조세감면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단일화

- 필요성
 - 조세지원에 관한 규정의 일관성·통일성 유지
 - 전반적 감면수준을 조정하여 세입기반 확충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 조성
- 추진방안
 - 세법이 아닌 일반법률(외자도입법 등 7개 법률)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흡수
 - * 중요 감면요건이 일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가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
 - 예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나. 개별 조세감면에 대한 일몰조항의 도입

- 필요성
 - 조세지원의 기득권화, 만성화 경향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한시적으로 조세지원효과를 극대화
 -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퇴출제도 성격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도 감면조항별 일몰규정 설치 필요
- 외국의 사례
 - 일본 : 1, 2, 3, 4, 5, 6, 8, 10, 10년 이상 등 9단계로 구분하여 조항별로 적용 시한 규정
 - 대만 : 법 자체를 10년 단위로 운용
- 적용시한 설정 기본방향
 - 원칙적으로 단기 2년, 장기 5년의 2가지 종류 운용

- 예외적으로 1년 또는 특정기한 설정허용
- 현행 규정상 1999년말 시한완료되는 조세지원은 1년 기한 설정
- 지원목적이 분명한 경우(예 : 2002년 월드컵 준비지원)는 목적사업 완료시까지 운용

○ 적용시한별 조세지원제도 선정기준 및 예시

- 1년의 적용시한을 두는 제도
 - 현행 규정상 1999년말에 적용시한이 종료하는 지원제도
 - 2년의 적용시한을 두는 제도
 -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제도 중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는 분야(예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세액공제)
 -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원제도(예 :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제도)
 - 향후 채택되는 신규 조세지원제도
 - 5년의 적용시한을 두는 제도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예 : 기술·인력개발, 중소기업, 농·어촌 지원제도)
 - 지원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제도(예 : 각종 준비금 설정 등 간접감면제도)
 - 기타 간접세 감면 등
 - 기타
 - 조세지원 목적이 분명한 것은 목적사업 완료시까지 운용(예 : 국제경기대회 사용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 1998년말에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조세지원제도는 폐지여부 신중 검토

다. 조세감면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 필요성
 - 각 부처로부터의 조세감면요구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조세감면 필요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등은 거의 없는 실정
 -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상세수 감소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
 - 각종 경제대책 수립시 갖추기식 조세지원요청 관리 필요
 - * 1998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조세감면규제법 4회 개정
- 개선방안
 - ① 새로운 조세감면 건의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세출예산요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 건의방법 제한
 - 모든 조세감면 건의(특히, 각종 이익단체 건의)는 주무부처를 경유토록 하여 해당부처로 하여금 1차적 조정기회 제공
 - 주무부처는 건의목적, 기대효과, 연도별 세수감 추정 등을 적시한 '조세감면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
 - 건의빈도 및 시기관리
 -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건의 가능(세출예산과 보조를 맞추어 5월말까지 조세감면건의서 제출)
 - * 다만, 긴급한 조세지원수요가 있는 경우 「경제대책조정회의」 등 장관급 회의 통과를 전제로 조세감면 추가 건의 가능
 - 심사
 - 재정경제부 자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조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심사분석 평가의뢰

- 효율적인 조세지출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 내에 기획예산위원회 등 예산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조세감면심사위원회' 설치방안 검토

→ 조세감면 총액한도제 도입(예 : 매년 조세감면규모의 상한선 설정) 등 대비

② 사후평가 의무화제도 도입

- 평가의무화 대상

- 모든 신규 조세지원 제도(도입 후 최소 2년간)
- 일몰조항에 따라 시한 만료가 되는 조세지원제도
- 기타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조세지원 제도

- 평가방법

- 해당부처는 조세지원효과, 실제 세수감, 자체 평가의견 등을 적시한 「조세감면평가보고서」를 제출

- 평가시기 및 심사 : 신규 「조세감면건의방식」과 동일

- 용도

- 적용시한 연장여부 결정시 참고자료, 조세지출예산 편성시 준거자료로 활용

라. 조세감면의 축소조정 및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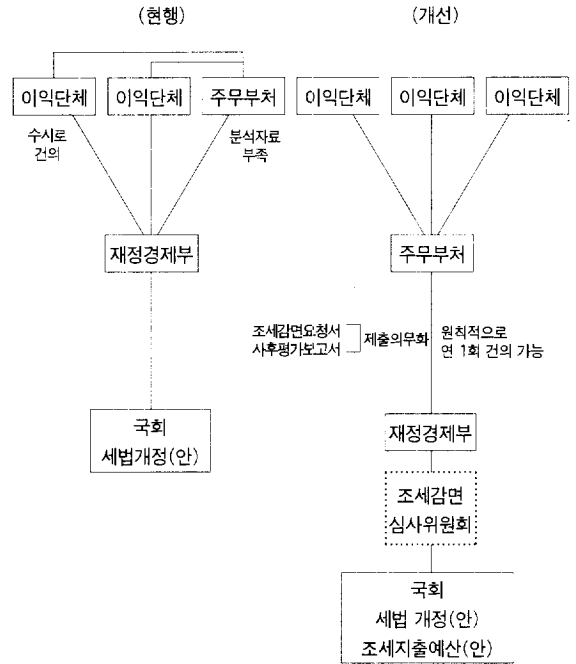
○ 농어촌특별세 폐지방침에 따라 조세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상당액만큼 감면세 축소

- 세수중립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감면율의 약 10~20% 축소 불가피(예 : 50% 감면→40% 감면)

○ 준비금 손급산입률, 세액공제율, 세액감면율 등 지원수준을 재검토하여 조정

- 그동안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하가 꾸준히 진척된

조세감면관리절차 비교



* 문제점 : 조세감면요구 남발, 빈번한 세법개정, 조세감면의 효율성 저하

것에 부응하여 종래의 고세율구조를 전제로 한 다감면체제를 저세율구조에 적합한 소감면체제로 개편

→ 예 : 공장·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설정한도 축소 방안 등 검토

○ 불요불급한 감면 축소·폐지

- 지원의 효과를 이미 달성했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지원제도 폐지 내지 축소 추진

→ 예 : 산업합리화 지원제도

- 복잡하고 다단계화된 감면제도는 통폐합
- 각종 조세감면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원제도 위주로 단순화
- 예 :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여러 감면제도간 중첩

마. 개별지원제도 검토

- 기본방향
- 1993년말 조세감면규제법 전면 개편 이래 운용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사항은 그때 그때 법개정을 통하여 기초치
- 특히, 1997년 하반기 이후 4차례 법개정을 통하여 제도 보완
- 향후 조세감면규제법 개편은 앞에서 열거한 전반적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개별 지원사항은 시급한 조세감면 수요 반영 및 일부 제도보완에 한정

- 기업 구조조정 촉진 지원 강화(필요시 별도로 조기 개정)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매입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허용(매각부동산의 수요창출 지원)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 「기업 구조조정기금」 및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SPC) 등에 대한 세제지원 : 검토 진행중
- 기타 현행제도 보완 및 개선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보완여부
- 검토방향 : 감면대상 업종 확대, 감면한도액 설정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법 개선여부
- 검토방향 :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속적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액공제방법 개선
- 공장·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설정한도 조정 여부 등
- 검토방향 : 한도설정 하향조정 여부
- 투융자손실준비금의 환입방법 보완
- 검토방향 : 현행 4년거치 일시환입방법에서 3년거치 3년분할 환입방법으로 조정여부(다른 준비금 환입방법과 일치)
-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보완
- 검토방향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의 국내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 * 타분과위원회(소득·소비·재산) 논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금년 정기국회시 법 개정 추진

II.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
-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으므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조세감면을 일컫는 것으로
- 정부가 조세를 통하여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하여 주는 예산지출과 대칭되는 개념

2.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조세지원의 규모와 내역을 밝혀 줌으로써 재정의 실질적인 규모 및 수혜자가 정확히 노출
- 조세지원 효율성 제고 및 추가 재정수입 확보
 - 기득권화되어 있는 조세감면을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추가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
- 조세체계의 단순화
 - 방만한 조세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로 인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단순화하는 데 기여
- 정책수단간의 연계성 강화
 - 세입과 세출을 연계한 종합적인 재정정책 수립 용이

3.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사례

- 도입국가 : OECD 29개국 중 미국·독일 등 14개국이 도입
- 도입형태
 - 제출빈도 : 대부분 매년 제출(독일은 격년제)
 - 강제제출 여부 : 미국·오스트리아 등 7개국이 강제 제출 입법화
 - 작성세목 :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든 나라가 소득세 및 법인세는 포함

- 추계방법 : 모든 국가가 세수손실법 채택(미국은 지출등가법 병행)
- 분류방법 :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목별·기능별로 분류
- 활용 :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은 의회 심의자료로 활용, 기타 국가는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

4.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 조세지출의 개념, 작성세목 대상, 규모 추계방법, 국회제출형식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이 없음.
- 구체적인 조세지출의 내역이 예산형태로 공표될 경우 농업 등 특정분야에 있어서 교역상대국과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
- 예산지출의 항목과 조세지출의 항목이 일치되어 비교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나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참 고〉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교

	도입시기	강제여부	의회심의 여부	제출빈도	분류방법	작성세목	추정방법
호 주	1998년	×	×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세수손실법
오스트리아	1998년	○	○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전세목	세수손실법
벨 기 에	1998년	○	○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전세목	세수손실법
캐 나 다	1979년	×	N/A	매 년	세목별, 기능별, 감면종류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세수손실법
핀 란 드	1988년	×	○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전세목	세수손실법
프 랑 스	1980년	○	○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전세목	세수손실법
독 일	1967년	○	○	격 년	세목별, 기능별	전세목	세수손실법
아일랜드	1982년	×	×	매 년	세목별	소득세, 법인세	세수손실법
이탈리아	1990년	×	×	수 시	세목별, 기능별	전세목	세수손실법
네덜란드	1987년	×	×	수 시	세목별	소득세, 법인세	세수손실법
포르투갈	1991년	○	○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세수손실법
스페인	1979년	○	○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전세목	세수손실법
영 국	1979년	×	×	매 년	세목별	소득세, 법인세	세수손실법
미 국	1968년	○	N/A	매 년	세목별, 기능별	소득세, 법인세	세수손실법과 지출등가법

5.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 정확한 조세 감면통계 확보방안 강구

- 조세감면의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조세감면 통계 보완
- 납세자의 과세자료 신고서식과 국세청의 감면실적 보고서식 보완여부 검토

○ 조세지출의 범위 확정

- 조세지출의 범위는 조세지출의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 선행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조항을 협의의 조세지출, 광의의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 등 3가지로 분류하고
 - 조세지출예산에는 협의의 조세지출만 반영하는 방식 추진

• 광의의 조세지출은 비망항목(memorandom item)으로 부기하는 방안 검토

○ 조세지출규모의 추계방법

- 조세지출예산은 과거의 감면실적뿐만 아니라 일반세출예산과 같이 미래의 감면 예상액도 동시에 반영 필요

○ 조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세감면규정의 단일화, 일몰조항설치, 조세감면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

사후평가 의무화제도 도입 등

- 실제 도입은 준비 이행사항을 보아 가면서 1999년 이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6.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수정 채택

○ 동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1998년중에는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에 주력

• 주요 선진국의 제도 도입 및 운용 실태조사 선행

•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세지출예산제도 정립

→ 이를 위해 정확한 감면통계 확보, 조세지출범위 확정, 추계 방법 개선 등에 노력

•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여건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개별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조항 채택 및 사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에서 5월 20일에 발표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의 전문입니다.

○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1998년 5월 20일(수) 09:00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6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의가 있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소요재원조달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리해야할 부실채권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예상되는바(정확한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6월말까지 파악 예정)
- 부실채권정리 등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기관이 최대한의 자구노력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에는 막대한 자금이 초기에 소요되는 데 비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함.
- 정부가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채권 발행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자금규모는 약 50조원이며 이 중 25조원은 부실채권매입에, 16조원은 금융기

관의 증자지원에, 9조원은 예금대지급에 대비한 것임.
- 채권이자와 회수불능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실제 부담규모는 1998년중 3조 6천억원, 1999년중 8~9조원으로 추정됨.

○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및 그 동안의 정부의 대응과정을 설명하고
 - 외환시장의 안정과 4대부문 구조개혁과제인 금융구조개혁, 기업구조개혁,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재정과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 노·사·정 합의, 금융경색 완화, 구조조정 재원조달 등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애로해소 대책과 함께
 - 구조개혁 후의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였음.
- 또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외환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 구조조정의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할 필

요가 있으므로

-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홍보전문조직체계를 수립하고 외국의 홍보전문자문회사를 활용하는 내용의 「국제 경제홍보시스템 구축」방안도 함께 보고하였음.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1998. 5. 20.)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

1. 경제구조개혁의 본격화

1.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 지난해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그동안의 과도한 외채누적으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촉발되었으나
- 보다 근본적으로는 권위주의적 관치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성장전략의 폐단과 방향성 없는 세계화정책의 실패, 세계경제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친 데 기인
- 이에 「국민의 정부」는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개혁작업의 원칙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본철학을 제시하고
- 외채만기연장,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 등 당면한 외환위기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외환유동성 확보 노력에 주력한 결과 단기적인 외환수급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
- 이제는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단계

- 그동안의 노력으로 금융·기업·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고 각 부문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앞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금까지의 제도개선 기반을 바탕으로
- 당면한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경제구조 개혁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 노·사·정 합의, 금융경색 완화, 구조조정 재원조달 등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애로해소에 주력
- 경제개혁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강한 의지와 동참이 필요하므로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한 고통의 분담과 참여를 통해 개혁 추진

2.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

- 향후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불안감과 인도네시아 사태악화 가능성 등 대내외적 요인의 불확실성이 아직 크므로 외화유동성의 확보를 통하여 외환시장의 안정기반을 강화
- 가용외환보유고를 연말까지 410억달러 이상 확보
-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확대
- IMF 자금지원계획에 따른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도입 추진
- 기업의 해외매각, 외국인투자유치 및 민간부문의 자체신용에 의한 외자의 최대한 확보
-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의 제정 등을 통해 외환 및 자본자유화의 조기 추진

3. 금융구조개혁

- 금융구조개혁의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여 구조조정을 촉진 (restructuring)
 -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의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선도
 -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완급을 조절
 - 1998년 9월말까지 제1차 구조조정 완료
- 금융기관 본연의 자금증대기능을 회복(reengineering)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위험관리능력을 제고(empowerment)하며, 금융감독강화를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
 - 적기시정 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의 조기 도입
 -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강화
 - 여신심사위원회의 기능활성화와 편중여신의 규제 등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강화
- 금융구조개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추진
 -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금융기관 부실채권과 기업부실이 증가하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

- 주주·채권자 등의 적정한 손실분담(loss-sharing)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재정에서 부담하되 최소화되도록 노력

4. 기업구조개혁

- 기업구조조정은 5대 개혁원칙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
 - * 5대 개혁원칙 : 기업경영의 투명성,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채권자로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판별하여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한 퇴출을 유도
 - 은행별 자체 기업부실 평가(5월)
 - 판정결과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
- 이제 정부는 과거와 같은 기업활동에 대한 관여를 지양하고 구조조정 추진상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
 - 기업분할제도 도입,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허용,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등 M&A를 활성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토지공사의 부동산매입 등 「금융·기업구조개혁 추진방안」(1998. 4. 14.)을 차질없이 추진

5.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
 - 합리적인 고용조정관행 정립 및 근로자 파견제 허용 업무 결정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기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도 강화
- 노동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 고용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종합인력개발사업의 허용을 추진
 - 공급자 위주의 훈련체제에서 수요자 위주의 훈련체제로 전환

6. 재정과 공공부문 개혁

-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념에 충실한 수요자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
 - 예산운영방식을 성과관리방식(budgeting for results)으로의 전환, 복잡·다기화된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정비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복잡한 과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간소화·투명화하고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재검토하는 등 세제 및 세정 개혁
 - 지방정부 조직의 감축 및 재배치, 책임경영행정기관

(agency) 제도의 단계적 도입, 정부산하단체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 등 공공부문 혁신

- 재정과 공공부문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자율성 확대와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의 영역을 확대

II.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대응

1. 노·사·정 합의를 통한 개혁 추진

- 구조개혁 과정에서는 실업 등 고통이 불가피하게 발생
 -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토록 하여 구조개혁과정에 적극 동참을 유도
 -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각 경제주체의 요구와 주장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
 -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
 - 1998년 5월 19일 현재 7조 9천억원 중 6,559억원을 배정·집행

2. 금융경색완화

- 금융경색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될 때 해소 가능하나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경색 완화대책 추진
- 실물경제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리의 하향 안정 노력 지속
- 대기업은 mutual fund, 기업공개와 상장분리 등 자본시장과 해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토록 유도
-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수출부문, 주택건설업계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강화

III. 구조조정 재원조달

- 기업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
- 유상증자, 해외차입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해 조달
-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용은 금융기관의 자체노력을 통해 최소화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자도입 및 재정부담이 불가피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축소하고, 주주·채권자 등의 적절한 손실분담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

1. 기업구조조정 소요재원 조달

-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채비율(debt/

equity ratio)을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충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기업 스스로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과 외국기업과의 합작·외국인투자 등을 통해 외자를 적극 도입하고
- 계열기업 또는 자산의 해외매각을 추진
- * 현재 5대그룹이 향후 2~3년간 약 290억달러(한화 41조원)의 외자도입을 추진중
- 정부는 회사형투신(equity fund와 debt restructuring fund)을 도입하고, 양 기금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자본확충과 채무만기구조의 개선을 지원하며
- 부동산시장 개방과 부동산 수요기반의 확충을 추진

2. 금융구조조정 소요재원 조달

-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조달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를 축소하고, 부실기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 부실금융기관의 주주·경영진의 손실분담을 확대하고, 인원·조직감축 등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
-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는 부족재원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

가. 금융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

○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

- 금융은 경제의 혈액과 같은 것으로서 자금증개기능과 결제기능을 통해, 실물경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금융부실이 기업부실과 맞물려 이어지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해소하지 못하면
 - 금융경색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경제회복이 어려워지게 됨.
- 이와 같이 금융부실은 단순히 금융산업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금융구조조정의 추진방식

-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 있음
-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
 -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지원」을 통해 재무구조를 충실화하고
 -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되 「예금대지급」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재정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에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초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함.
-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증자나 자구노력에 의한 재원조달이 곤란하고 외자도입에도 한계가 있어
 - 금융기관 스스로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자금은 금융기관이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되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일반재정으로는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채권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liquidity)을 공급하고
-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함.
- 외국에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금융기관 자체의 노력 외에 재정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주요국의 예를 보면 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초기에 재정자금지원을 통해 금융부실을 근원적으로 해소한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이 조기에 안정되고 전체부담이 최소화된 반면
 -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경우에는 금융부실이 이연·확대되어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도 계속 지연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부담 사례

(단위 : 억달러, %)

	미국(90~95)	핀란드(91~93)	스웨덴(91~93)	일본(98이후)
규모	4,098	96	104	2,306
(GDP 대비 비중)	(6.0)	(8.3)	(4.7)	(4.3)

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발행 소요규모 추정

1) 정리대상 부실채권 규모 및 정리방법

- 1998년 3월말 현재 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68조원이며 향후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여신까지 포함한 불건전여신은 총 118조 원임.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 추정(1998. 3. 말 기준)

(단위 : 조원)

	부실여신 ¹⁾	요주의여신 ²⁾	불건전 여신
은행	40	46	86
비은행	28	4	32
계	68	50	118

주 : 1) 추계손실+회수의문+고정여신(6개월 이상 연체로서 담보가 있는 여신)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여신으로서 담보가 있는 여신 등

○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규모는 68조원이나

- 요주의 여신 중 상당규모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부실채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 기업의 증자나 자산매각, 해외합작 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실채권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확한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6월말까지 파악 예정

○ 부실채권 100조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 50조원은 금융기관의 손실로 나타나게 되며

- 나머지 50조원 중 25조원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정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25조원은 성업공사에서 매입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함.

2)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성업공사의 채권발행 소요

○ 성업공사의 채권발행 소요금액 : 약 25조원

○ 부실채권 매입시기 및 효과

-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계획(증자 등을 통한 주주부담 포함)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하도록 IMF와 합의

• 따라서 금융기관 정리방침이 확정된 후 금년 하반기 중 부실채권 매입 계획

-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총여신대비 부실채권비율은 5%p 수준 하락

○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회수

- 성업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기 회수

- 담보물건을 최적가격에 매각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3) 금융기관의 증자지원을 위한 채권발행 소요규모 추정

○ 증자소요규모 추정 : 약 39조원

- 금융기관이 100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경우 약 50조원의 매각손이 발생하며

• 매각손 50조원 중 대손충당적립액 15조원(기존적립액 9조원 + 1998년중 신규적립액 6조원)을 차감한 35조원의 손실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금액만큼의 증자가 필요하며

- 자기자본기준비율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이 기준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약 4조원의 증자가 필요하므로 총증자소요액은 39조원 수준임.

○ 증자지원을 위한 채권발행 규모 : 약 16조원

- 증자지원은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함에 따라 BIS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지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됨.
-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체유상증자, 해외합작, 후순위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증자소요의 50%(20조원) 정도는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 나머지 19조원 정도를 출자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현재 서울·제일은행에 3조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신규로 필요한 자금은 16조원 수준

○ 증자자금의 회수

- 금융기관의 증자에 투입된 자금은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수익성이 향상될 경우 증자금액 이상으로 회수 가능

4)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채권발행 소요 규모 추정 : 약 9조원

- 부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리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 소요 발생 가능
- 예금대지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실은행의 정리는 합병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하여 예금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현재 정리중인 종합금융회사와 앞으로 정리가 예상되는 금고·신협·증권사의 정리시 발생할 수 있는 불

가피한 예금대지급에 대비

- 약 9조원 정도면 발생가능한 예금대지급 소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종금사 정리시 기지금액 : 약 5조원

○ 예금대지급 자금의 회수

- 예금대지급 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최대한 회수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
- 부실금융기관 대출자산 회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 부실금융기관 경영진 및 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중 처리

5) 소요재원의 조달과 상환

가) 채권발행과 상환

-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채권발행 규모는 약 50조원으로 추정되며 시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중 약 40조원, 내년중 약 10조원이 소요됨.
- 부실채권 매입 : 25조원
- 증자지원 : 16조원
- 예금대지급 대비 : 9조원

○ 채권발행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발행

- 50조원 중 이미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아직 발행하지

(단위 : 조원)

	기정부보증 채권		추가발행	총 계
	기발행	미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7.5	11.5	13.5	32.5
예금보험기금채권	6.5	5.5	19.5	31.5
계	14	17	33	64

않은 채권이 17조원이므로 추가 발행 규모는 약 33조 원임.

- 발행된 채권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채권발행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여 채권의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채권보유에 따른 BIS부담을 축소 (위험가중치 10%→0%)시키는 한편
- 시장금리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자금과 같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자금은 채권으로 지급하여 금융기관의 보유를 유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물량소화 부담을 최소화함.

나) 재정의 실제 부담규모

- 성업공사가 매입한 채권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회수가 가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증자를 위해 출자한 지분은 금융기관이 정상화된 후 매각을 통해 대부분 회수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한 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최대한 회수하더라도 그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약 70% 회수 예상).
- 따라서 채권이자와 회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나 지원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함.
- 재정부담은 1998년중 3조 6천억원, 1999년중에는

8~9조원으로 추정되며 이후 투입된 소요자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채권을 상환해 나감으로써 재정부담은 연차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1998년중에는 예산에 3조 6천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채권이 14조원 발행되어 있고 추가 채권은 하반기중에 발행할 것이므로 연간 이자부담은 현재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
- 1999년중 재정부담 8~9조원은 예산에서 세출축소와 세입증대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약 4~5조원을 부담하고, 초과분은 국채발행 및 외자도입 등을 통해 충당
- 이와 함께 예금원리금 보장의 단계적 축소, 변동금리 부기금채권 발행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IV. 한국경제의 비전

1. 경쟁력 있는 한국경제의 건설

- 철저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개방형 경제로 전환되어 세계 모든 나라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추구
- 모든 국제적인 관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
 - 기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간섭과 규제가 모두 철폐되어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외국인투자의 최적지로 부상
- 국제수준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른 자유로운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경제
- 내외국인의 경제활동에 차별 없는 경쟁이 촉진되고 국산품이건 외국상품이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환영받는 경제
- 4대 부문 구조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에 맞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고 각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이 전환
- 공공부문에 민간경영방식이 도입되어 수요자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무구조가 건전화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신용도 제고
 - : 이사회 · 주주총회 등 내부건제장치와 금융기관 · M&A시장 등 외부통제장치가 활성화되어 경영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등을 통해 개별기업의 독립경영과 부실기업의 퇴출이 용이
 - :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기술혁신에 주력
- 금융기관은 책임경영체제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양질의 자금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
-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평생직장의 시대에서 평생고용의 시대로 전환됨으로써 동태적인 고용안정을 달성
- 중소 ·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 성장잠재력이 극대화
- 인력 및 기술개발, 정보통신 및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제공

- 구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발전되어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와 비민주적 정치체제가 가져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마련

2. 한국경제의 전망

- 1998년중 금융 · 기업구조조정 등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추진
- 1999년부터는 「경제안정」을 회복
- 2000년부터는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제도 약」이룩
- 1999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입금융의 정상화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를 확대
- 이와 아울러 금융 · 기업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경제구조의 확립과 대외신뢰도를 회복
- 1999년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 · 외환시장의 안정과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 내수회복과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해 고용상황 개선
- 향후 2년간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내실화되어 2000년부터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경제로 전환
- 구조조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 증대, 노동력의 효과적인 배치로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증대

-중소·벤처·수출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로 지속가능한 성장 활력 확보

○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강화

국제 경제홍보 시스템 구축

3. 국제관계 홍보시스템 구축

1. 국제 경제홍보의 시급성

○ 홍보에도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에 계약직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홍보전문 조직체계 수립

○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외환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외국의 홍보전문자문회사를 활용

○ 우리경제의 현황과 구조조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외채협상시 홍보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한 외국의 국가홍보전문자문회사(Burson-Marsteller사) 등을 활용(소요재원은 예비비 등 활용)

2. 국제 경제홍보 과제

○ 외신기자에게 영문자료 적시 제공, 외신기자클럽 정례 브리핑 등 상설 접촉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

○ 외국의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에게 한국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

○ 외국기관 및 개인투자자, 민간은행, 직접투자자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활동 추진(investor relations management)

○ 국제회의·해외행사시, 현지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활동 강화

자본·외환 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 개선방안

※ 다음은 5월 14일에 개최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위원회 1998년 제1차 회의자료 「자본·외환 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 개선방안」의 전문입니다.

1. 자본·외환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현황

1. 내국인의 국외자산 취득 자유화 현황

○ 부동산

- 종합무역상사의 경우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10% 이내에서 최고 미화 1억달러까지 취득 허용
- 개인의 경우 상용·공무 목적으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에 한하여 50만달러 이내의 주택 취득 허용

○ 증권투자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자유화 허용

○ 예 금

- 법인의 경우 3백만달러, 개인의 경우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자유화 허용

○ 내국인의 해외증권 발행

- 1996~97년
 - 주식연계증권발행(DR, CB, BW 등) 자유화
 - 원화표시 주식연계증권 발행 허용

- 주식 비연계증권(채권 등) 발행 자유화

- 1999년 : 자격요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발행한도 폐지

○ 상업차관

- 1996~97년 : 중소기업 자유화, 일반기업 제한적 허용
- 1997년 12월
 - 모든 기업 자유화
 - 모든 기업 용도제한 한시적 폐지(1998년말까지)

○ 연지급 수입

- 1997년 상반기 : 중소기업의 경우 180일로 연장
- 1997년 하반기 : 대기업의 경우 180일로 연장
- 1998년 2월 : 모든 기업 360일로 연장

2.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개방·자유화

○ 증권시장 개방(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 1997년 : 23%(1인당 6%) → 1997년 하반기: 26% → 1997년말: 55%(1인당 50%) → 1998년 상반기: 한도폐지 예정

○ 채권시장 개방

- 1996년말 :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의 제한적 허용
- 1997년 6월 :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의 제한적 허용
- 1997년말 : 완전개방

○ 외국인의 국내증권 발행

- 1996년
- 외국기업의 주식상장 및 원화채권 발행 허용
- 외국기업 CP 등 자금시장 증권 발행

○ 외국인투자자의 M&A

- 모든 M&A를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임(현재는 발행주식의 3분의 1까지 허용)

※ 추가로 자본이동 및 외환자유화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현재 작업진행중(하반기 관련법 개정 추진)

II.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1. 현행제도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제도는 완납적 원천징수제도로서 양도이익에만 과세하고 양도차손 반영기회 없음.
- 과세대상 : 비상장기업주식, 상장기업주식 중 25% 이상 지분보유자
- 납세의무자 : 주식양수자(대가를 지급하는 자)
- 세율 :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

- * 미국·일본·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양도차손 반영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변칙적인 유가증권거래시 동 거래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 거래당사자가 내국법인 또는 신고납부하는 외국법인인 경우 적용

- * 이전가격세제 : 거래당사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 적용

2. 개선방안

- 과세제도 개선 :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기회 부여
- 현행과 같이 원천징수제도를 유지하되 양도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차손 반영기회 부여
- 신고납부기한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로 함.

- 특수관계자가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간 변칙적 유가증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장치 마련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III. 비거주자의 전문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1. 현행제도

- 우리나라 과세제도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전문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시 지급액의 20%을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함.

○ 외국의 과세제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같이 신고·납부제도 채택(예: 미국)
- 일본 :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20%로 원천징수한 후 신고납부

2. 개선방안

○ 과세제도 개선 :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 기회 부여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전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필요경비 허용범위

- 용역수행자의 항공료, 체재비(상관행상 인정되는 한도 내)
- 용역수행을 위해 지출한 각종 사용료,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IV.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1. 현행제도

○ 현 제도상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에 한정

-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과세 불가능

○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관련 국외원천소득의 과세누락 초래

- OECD 등 국제과세기준은 고정사업장에 관련되는 경우 국내의 원천 구분없이 과세
- 세계화, 자본이동 자유화 등에 따라 국내외 원천소득의 경계 불분명

2. 개선방안

○ 국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 범위를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까지 확대

- 국내 고정사업과의 실질적 관련여부 판단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마련 : 미국 과세기준 참조

○ 국내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분류기준 명확화

-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이더라도 고정사업장 관련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분류

<참 고> 미국의 국내사업장 과세기준

○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미국에서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한, 미국 원천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 특히 다음의 국외원천소득은 미국에서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foreign source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U.S. business)으로 간주

- 당해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무실 또는 고정된 장소를 갖고 있고
- 사무실 또는 사업장소가 소득 창출에 중요한 요소(material factor)로 작용하고
- 당해 사무실 또는 고정장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소득

-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예시하면

- 미국 외에 소재하는 무형재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 및 동 재산에 대한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대가로 받는 임대료 및 로열티
- 미국에서의 은행·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 또는 유가증권(주식 포함)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이자
- 미국 외에서 판매하는 자산을 미국에 소재하는 사무실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국외원천소득이 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실질적 요인기준(material factor test)에 의해 판정

* 실질적 요인 기준

- 국내고정사업장이 당해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경제적 요인(an essential economic element)으로 작용하여 중대한 기여(a 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하는 경우

(예) 미국 내 고정사업장이 ① 주문의 권유 ② 판매계약의 교섭 ③ 기타 그 판매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수행하는 일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득

이 실현된 경우 그 미국내 고정사업장은 당해 소득실현의 실질적 요인이 됨.

- 당해 소득이 그 국내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하는 정상적인 사업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he trade or business)에서 실현된 것인지 여부

V. 거주자의 국외원천 자산소득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1. 현행제도

- 자본자유화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이므로
-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자산양도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인 과세기준이며

- 국내자산 양도소득보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상 우대시 자본의 해외도피(capital flight) 유인 제공

2. 개선방안

○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국외자산 양도소득 동등 대우

○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거주자 : 양도소득세, 법인 : 법인세 + 특별부가세

*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현재도 과세

○ 과세대상 국외자산

-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유가증권 등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준함.
- 단, 주식의 경우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도 포함

○ 과세소득산출 및 세액 계산

-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시가로 과세
- 자본적 지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은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적용
- 세율은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미등기 양도자산 적용세율(75%) 및 중소기업 주식 적용세율(10%)은 배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해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안분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특례적용

- 외국인거주자로서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외자산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조항 마련

VI. 거주자의 국외자산소득 세원관리체제의 확립방안

1. 현행제도

- 자본자유화 등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

외원천자산소득을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과세자료의 적절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자본자유화 추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외자산 거래 및 송금자료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 우리의 경우 이미 외환관리제도상 해외자산거래 및 송금자료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하나 제도 및 관리시스템의 보완이 필요

* 현행 국세청 통보제도

- 국외예금: 1백만달러 이상
- 국외 주택취득자금 송금시: 10만달러 이상
- 외환매각·외화예치: 2만달러 이상
- 해외직접투자 및 각종 용역대금 지급내역 등

- 기타 조세조약에 의한 국가간 과세자료교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자료제출의무 등에 의해 해외과세자료 수집

2.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 해외 투자자금 송금 및 해외자산 변동내역 통보 제도 강화

* 예시

- 해외예금·송금 통보범위 확대: 2만달러 이상
- 해외예금·부동산 변동내역 통보 추가: 10만달러 이상

-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해외소득 과세체계를 마련해 가도록 함.

- 금융결제원과 국세청간의 전산망 구축을 통한 국외자산 거래자료의 통보제도 추진
 - 국제금융국은 외환거래 전산시스템 추진중
- 외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한 체제의 구축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전자매체(magnetic tape)를 통해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고
 - 「조세문제에 관한 상호행정협정(The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Tax Matters)」에의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
 - 동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협정가입국에 의무적으로 파세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음(현재 6개국 가입 : 미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Ⅶ. 파생상품 관련소득 과세제도 정비방안

1. 파생상품 현황

- 파생상품 개념
 - 파생금융상품은 옵션, 스왑, 선물, 선도거래 등으로 분류되고, 통화, 금리, 환율, 주가지수 등과 연계되어 상품을 형성
- 국내시장 현황
 - 주가지수 선물거래시장(1996. 5. 개설)에서 선물, 옵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국내 주가지수 선물시장 규모(1998. 2. 기준) :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 국내금융기관 등은 해외시장을 통해 다양한 파생금

융거래를 하고 있음.

- * 거래금액의 99%(1995 기준)가 금리 및 통화관련 상품임.

2. 과세제도 및 회계기준

- 과세기준
 - 법령상 명시적 규정없고, 기본통칙과 예규를 통해 손익인식시기에 등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만 있을 뿐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통해 「선물거래 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손익인식시기 수용
- 파생상품관련 회계기준
 - 손익평가방법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헷지거래는 기초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름

3. 개선방안

- 가. 과세원칙
 - 1)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파생상품 소득 :
 - 제1안 : 비과세
 -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 및 외자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고려
 - 이 경우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기타소득조항(비거주자·외국법인)을 개정, 파생상 관련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제2안 : 과세

- 거주자·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고려, 세법상 과세 규정 존치

- 이 경우에도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경우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 결국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와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

2) 내국법인·거주자·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파생상품소득

○ 내국법인·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현행대로 과세

○ 거주자·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나. 과세방법

○ 파생상품 관련소득 과세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 천명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규정

- 파생상품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이용 소득구분·소득 인식시기 등을 조작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납용방지원칙 확립 필요 → 거래형태에 불구하고 내재되어 있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

○ 파생상품 관련소득 과세시기 및 평가방법

- 기업회계 준중의 원칙에 따라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세법에서 수용하도록 함(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일부 기수용).

- 순수 매매목적(trading purpose)의 거래

: 객관적 시가가 있는 장내파생상품 → 시가평가주의에 따라 매 과세연도 말에 평가하여 손익 인식

: 객관적 시가가 없는 장외파생상품 →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정산시점에서 손익인식

- 위험분산 목적의 헷지거래: 기초자산과 파생상품간의 소득 인식시기 일치

: 기초자산이 시가평가 대상인 경우 → 시가평가하여 과세연도 말에 손익인식

: 기초자산이 시가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 결제(정산)시점에서 손익인식

- 상기 과세시기 및 평가방법은 개인소득(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파생상품의 과세소득 구분

- 내국법인 및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소득구분 불필요

- 거주자, 비거주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선물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사업소득
- 그 외의 자 → 기타소득

○ 기초자산 평가기준과의 조정

- 현행 파생상품 평가방법은 시가주의 적용시 기초자산의 평가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조정방안

- 제1안 : 미국, 영국 등

- 시장성 있는 주식·채권·일반상품 등 객관적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원가법을 위주로 평가방법 존속

회계기준과 세법상 평가기준과의 비교

기초자산	회 계 기준	세 법	파생상품에 대한 처리기준
주식	시가법	원가법	순수매매목적
채권	원칙은 원가법으로 하되 시가법 적용가능	원가법	-장내파생상품 : 시가법
일반상품	원칙은 원가법으로 하되 저가법 적용가능	원가법 저가법	-장외파생상품 : 원가법
통화	기말환율평가 ¹⁾	기말환율평가 ¹⁾	
금리	기말현재이자율에 기말환율적용 ²⁾	기말현재이자율에 기말환율적용 ²⁾	헷지목적 : 기초자산 소득인식시기 일치

주 : 1) 화폐성 자산·부채의 경우임(비화폐성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취득 원가로 계상).
2) 외화채권 또는 외화채무에 대한 적용금리를 가정한 것임.

- 제2안 : 일본

- 「제1안」을 모든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추후 그 대상을 확대

- 제3안

- 헷지거래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 기초자산평가를 시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제1안 도입

5. 제도 수용방안

- 소득인식시기,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법 및 기본통칙상의 수용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
- 향후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

VIII.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 정비방안

1. 전자상거래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

- 고정사업장, VAT 공급장소, 소득구분 등 기존의 조세체제에 새로운 문제제기
-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결정 곤란으로 과세권 행사 곤란
-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등으로 세무조사 추적 곤란
- 어느 과세관할권이나 인터넷 주소 개설이 가능하여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결정 곤란
- tax haven 및 역외금융기관 접근의 용이화로 조세 회피의 가능성 증가

2. 검토

- 국제조세에 있어서의 과제
- 고정사업장 관련
 - 컴퓨터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사업장소(place of business)를 구성하며, 서버가 고정(fixed)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에 관한 문제
 - 이와 관련, operator를 중심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정립하려는 견해(미국)와
 -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정립하려는 견해(유럽)가 대립
 - * 상기 견해의 대립은 VAT의 사업자등록 방안에도 그대로 반영

- 소득의 성격규명 관련
 - 디지털정보의 대가가 재화 판매대가, 서비스 제공대가, 지적재산권 사용대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의 소득구분에 관한 문제
- 로열티소득 관련
 - 소비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용이하게 복사할 수 있는 인터넷 디지털정보의 판매에 대한 OECD 모델 협약상의 '로열티' 개념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 OECD 모델협약의 로열티 정의(제12조) :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일체의 대가
 - 동 논의와 관련, CFA는 다음과 같이 모델협약 Commentary의 수정을 추진
 - :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될 수도 있음을 인정
 - : 권리의 부분양도의 대가는 '사용료'로, 단지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에 있어서의 과세
- 공급장소(place of supply)의 원칙 관련
 - * 공급장소의 원칙 : 부가가치세를 공급장소에서 공급자가 거래징수하는 원칙
 - 기존의 공급장소의 원칙을 인터넷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발생
 - operator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보려는 견해(미국)와 소비자 소재지(즉, 웹사이트 이용장소)를 공급장소로 보려는 견해(유럽)가 대립
 - : 전자는 operator를, 후자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등록방안을 제시

- 조세행정의 과제
- 전자상거래관련 소득의 포착
 - 과세당국은 적절한 사업자등록방안 마련 등 전자상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 마련 필요

3.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과세원칙에 관한 논의

-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과세원칙
- 현재까지 OECD를 비롯한 어느 국제기구 또는 어느 정부도 인터넷거래 과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한 바가 없음.
 - 다만, OECD 등 관련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미국과 EU의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 조세제도는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함.
- 비트세(bit-tax)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세부과는 지양
- 인터넷을 통한 재화 및 서비스 전송은 관세면제
- OECD 재정위의 전자상거래 과세의 원칙
 - ① 과세의 형평성 ② 조세제도의 단순성 ③ 조세제도의 명확성 ④ 조세제도의 효율성 ⑤ 경제적 왜곡의 회피 ⑥ 유연성과 동태성 ⑦ 세원배분의 공정성 ⑧ 새로운 조세부과의 억제
- * 미국 클린턴 정부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1997. 7.)의 주요내용
- 지구촌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환경의 조성과 기존 상거래와 조세면에서 중립적이고, 단순성과 투명성을 지닌 조세제도의 정립을 주장
- * OECD는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과세기준을

천명할 계획에 있음.

- * OECD 재정위는 상기 오타와 각료회의에의 보고서에 포함될 과세의 기본원칙(Framework Condition for Taxation)의 마련을 위해 Electronic Commerce Tax Administration(ECTA) Group을 신설

4. 향후 대응방안

- 전자상거래의 속성상 이에 대한 과세제도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국제적인 공동보조가 필요함.
 - OECD 등의 국제적 과세기준 제정에 참여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내과세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함.
- * 인터넷거래에 대한 '무관세원칙'은 관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므로 수용에 문제 없음.
 - 다만, 주문만 인터넷을 통하여 배달은 전통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중립성의 원칙'에 의해 당해 재화에 대해 관세부과
-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구축시(예:전자상거래 기본법 등) 적절한 국내과세제도 및 관련 정보수집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follow-up

기업과세제도 개편방안

※ 다음은 5월 14일에 개최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소득분과위원회
1998년 제1차 회의자료 「기업과세제도 개편방안」의 전문입니다.

I. 현행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기본 방향

○ 현행 법인세법은 지난 1967년 전면개정 이후 30년간 부분적인 수정·보완에 그침에 따라 과세제도가 법령·통칙 등에 걸쳐 복잡하고 비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

→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체계적으로 전면 재편

○ 최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으나, 과세체계가 미진하고 상법에서 분할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필요

→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 및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등 각종 규제제도를 변화된 경제여건에 적합하게 개선

○ 각종 경비처리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개별 경비의 개념이 모호하고, 변칙·과다지출 경비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

→ 각종 경비처리원칙과 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경비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특정 법인 및 업종에 대하여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법인간·업종간 과세 불형평을 초래하는 문제

→ 특정 법인 및 업종에 대한 특례를 축소하여 과세형평 제고

○ 각종 규제제도가 중복되고, 신고·납부 등 과세절차와 관련하여 납세·징세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과세의 효율성이 저하

→ 각종 규제제도 및 신고·납부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과세비용을 최소화하여 과세의 효율성 확보

II. 주요 개편내용

1.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가. 개편방향

- 합병·분할 등 기업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재검토·정비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최대한 지원
-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제도를 변화된 경제여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개선

나. 검토방안

1)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일반 합병(시가평가 합병)의 과세이연 등 지원요건을 명확화
 - 사업상의 목적(사전계획 제출), 사업의 계속성 등
- 추가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장부가 합병을 허용
 -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합병 등
- 장부가 합병 중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 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 요건
 -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구분 경리)
 - 승계 결손금의 잔여 공제기간분만 공제
 - 연간한도 : 소멸법인 주식가치 × 일정률(예 : 10%)
 - 소멸법인 주주의 지분비율 요건 등

- 기타의 합병은 자산매각으로 보아 과세
 - 교부받은 신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청산소득·의제배당 과세

2) 기업분할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가) 상법 개정안

- 분할의 유형 : 단순분할, 분할합병
 - 단순분할 : 재산을 출자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
 - * 출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분할합병 : 재산을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에 출자
 - * 흡수 분할합병, 신설 분할합병 모두 가능
 - * 존립중의 회사에 출자와 동시에 회사설립 가능
 - * 주식회사만 가능(주총 특별결의)

○ 분할의 효과

- 신주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직접 귀속, 분할회사가 설립 회사의 주식총수 취득 가능(물적 분할)
 - * 분할회사는 존속(자본금·준비금 감소) 또는 소멸
- 설립·존속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
- 영업권 계상가능, 분할차익 계상, 법정 준비금 승계가능

나) 과세 및 지원방안

- 사업상 목적(사전계획 제출), 사업의 계속성, 분할의 범위(독립된 사업부문) 등 일정 요건 충족시 과세이연 등 지원
- 분할 유형에 따라 과세이연 등 지원요건을 명확화

○ 단순 분할

① A형 : 자회사 설립 후 존속, 신주는 모회사 귀속

- 요건 : 모회사 지분율 100%(단독 출자) 등

* 시가에 의한 출자를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지원

- 자산 처분익에 대한 법인세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 법인세 : 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모회사에게 과세
- * 특별부가세 : 자회사가 출자받은 자산 처분시 과세
- 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지급이자 부인 등 규제 배제
- 자회사가 출자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면제 등

② B형 : 자회사 설립 후 존속, 신주는 주주귀속 (split up)

- 요건 : 장부가액 출자, 주주 지분비율 유지 등

- 지원 : 일부 청산으로 보아 합병과 유사하게 과세 (지원)

- 법인세 : 신주 액면가 - 감소 자본금 및 준비금
- 특별부가세 : 자회사가 출자받은 자산 처분시 과세
- 주주 의제배당 과세 : 신주 액면가 - 구주 취득가액
- * 신주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모두 과세이연

③ C형 : 2 이상 자회사 설립 후 소멸, 신주는 주주귀속

- 요건 : B형과 동일

- 지원 : 합병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지원)

- 소멸법인 청산소득 : 신주 액면가 - 자기 자본
- 소멸주주 의제배당 : 신주 액면가 - 구주 취득가액
- 특별부가세 : 자회사가 출자받은 자산처분시 과세
- * B형, C형의 경우 시가 출자를 허용하면, 법인세 과세가 완전 누락되므로 과세이연제도를 두기는 곤란

→ 다만, 자회사가 장부가액 초과분(평가증)을 분할차익으

로 계상하면 합병차익과 같이 자회사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

→ 미국의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장부가액 출지만 허용

○ 분할 합병

① A형 : 사업부문의 타법인에의 합병 후 존속, 신주는 주주 귀속

- 요건 : 교부금 제한(예 : 10%), 업종의 동일성 등

* 합병과 동일하게 시가출자를 허용

- 지원 : 일부 청산으로 보아 합병과 유사하게 과세(지원)

- 법인세 : 신주 액면가 - 감소 자본금 및 준비금
- 특별부가세 : 합병회사가 출자받은 자산 처분시 과세
- 주주 의제배당 과세 : 신주 액면가 - 구주 취득가액
- 합병회사의 분할차익 : 과세이연
- 시가출자시 영업권 등 합병과 유사하게 처리

② B형 : 2 이상 법인에 분할합병 후 소멸, 신주는 주주 귀속

- 요건 : A형과 동일

- 지원 : 합병과 동일하게 과세(지원)

- 소멸법인 청산소득 : 신주 액면가 - 자기자본
- 특별부가세, 의제배당 등 A형과 동일하게 처리

○ 기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산매각으로 보아 과세 (시가)

- 법인 : 법인세 · 특별부가세, 청산소득

- 주주 : 의제배당

3)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제도를 대폭 간소화

○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 적용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① 1안 : 현행 세부 판정기준을 폐지하고, 고유목적 사
용여부 및 총량치 기준만 적용

- 고유목적 : 법령 또는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허가 등)

- 총량치 기준 : 자기자본대비 토지가액비율(예 : 80%
미만)

* 업종 평균 : 33.4%

② 2안 :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유예기간 연장 및 매각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제외

- 유예기간 연장 : 1년, 2년(나대지), 5년(공장 등) →
3년, 5년

- 유예기간 내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 제외

* 1986년 3월 31일 이전의 경우 2년 6월내 처분시 비업
무용 제외

- 유예기간 경과시 경과시점부터 비업무용 판정

* 1990년 4월 이전의 경우

4)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보완

○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15%) 과세제도는
잉여금의 사외유출(배당)을 촉진시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므로 폐지하거나, 대상을 대폭 축소

*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지원 및 제도 간소화

5) 법인전환기업(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법인전환에 따른 진입비용을 경감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제한을
폐지

- 사업양수도 방식의 경우에도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현재는 50% 감면, 제한적
으로 면제)

- 수도권 신설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증과제도(5배) 폐지

○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특례허용(일정기간 한시적으
로 허용)

- 비업무용 부동산·타법인주식 등 지급이자 손비부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등 각종 규제를 배제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배제

* 개인과 같이 장기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 인정

- 수입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기준매출액대비 1.2배 초과 증가분의 30%가 매출액에
서 차지하는 비율상당 세액을 공제

○ 과표 현실화가 필요한 업종의 법인화 유도방안 검토
(한시적)

- 소비자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법인 등에 대하여 접대
비한도 등 세제상 규제를 배제하는 방안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속 규제

※ 기존 산업합리화를 통한 각종 세제지원제도는 WTO
협정, IMF합의사항 등에 배치되므로 폐지

2. 각종 경비의 손비처리기준 명확화

가. 개편방향

○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의 업무 관련성 원칙을
천명하고 그에 따른 각종 경비의 손비처리기준을 명
확히 규정

- 경비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나. 검토방안

- 손비처리되는 비용의 일반 원칙을 천명
 -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필수 불가결한 비용
 - * 미국 :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
- 일반 원칙에 따라 개별 경비의 손비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
 - 인건비·복리 후생비·여비, 광고선전비·회의비·접대비 등 개별 경비의 범위, 기업 공동경비의 배분기준 등 규정
 - 현재 통칙 등에 걸쳐 방만하게 규정되어 있는 각종 경비의 손비처리기준을 법령에 명문화
 - 사업과 관련성이 적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경비지출을 제한하는 방안 강구
 -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 편익을 위한 비용 등
 - * 각종 회원권, 고급 승용차 등의 운영·유지비
 - * 임차주택 및 주택자금 대부(현재 2천만원) 등
-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 축소·정비
 - 회계상 기간손익 계산의 적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되,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는 정비
 - 손해배상 충당금,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폐지하고, 실제 지출시 손비로 인정
 -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한도를 축소하거나 실적률 기준으로 개편
- 기부금 및 접대비제도 개선
 - 기부금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 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방향으로 보완(공익성 유무에 대한 기준만 설정)
- 특수관계단체에 대한 기부금 총액제한제도 도입방안 강구
 - * 예 : 총지출기부금 중 50%
- 전액 손비인정되는 기부금의 폐지방안 강구
 -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밀비제도 폐지
- 감가상각제도 간소화
 - 1994년 12월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 1월 이후 취득자산간 감가상각방법을 통합하여 간소화
 - 가동시간 단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내용연수의 연장변경도 허용
 - 차량·운반구·공구·기구 등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단일화 등

3. 과세의 형평성 제고

가. 개편방향

- 특정 법인 및 업종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축소·정비하여 법인간 형평성 제고
- 특수 관계자와의 부당거래를 통한 소득이전 등 변칙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

나. 검토방안

-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제도 보완

- 일반 공공법인에 대한 각종 특례를 폐지하여 사실상 공공법인제도를 폐지

-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 과세 선택허용 특례제도
- 신고기한 특례제도(1개월 연장)
-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 면제제도
- 비영리법인 간주 특례규정 등
-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방안 강구

- 이에 따라 공공법인에 대한 접대비 한도제한(일반 법인의 70%)은 폐지

○ 금융기관 등 특정 업종에 대한 특례제도 정비

- 금융기관 모집권유비, 합병서 청산·의제배당 면제제도 폐지
-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준비금·충당금 특례제도 축소·정비

○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보완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조문제 목 변경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계열법인 및 사실상 지배자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계 규율제도로 개편
- 변칙거래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대상을 확대
- 불공정 합병·불균등 증자 등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변칙거래 등을 포함

○ 결합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 1999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결합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상계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효율적인 세무관리 도모

○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체계 보완

-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정시 의제배당 과세대상을 확대(세법상 손익거래로 인식되는 자본잉여금 추가)
- 합병차익 중 이익잉여금, 자산 평가증분의 자본전입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 * 신규로 재평가대상에 추가된 토지에 한정하는 방안 등
- 기타 자본잉여금(자산 수증익, 채무 면제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의 자본전입 등

4. 과세체계의 간소화·명확화

가. 개편방향

○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여 과세체계를 간소화

○ 현행 법령체계를 체계적으로 전면재편

- 과세체계의 명확화,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납세편의 제공 및 과세비용을 최소화

나. 검토방안

○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규제제도 정비

- 차입금 과다법인(자기자본 2배 초과 법인)에 대한 타법인 주식, 농지·임야 등의 취득규제제도는 폐지하거나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

- * 2000년부터 과다차입법인(자기자본 5배 초과)에 대하여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 도입 → 노사정 합의사항 : 2001년 4배, 2003년 3배

- 부동산 임대 주업법인의 간주익금 과세제도 보완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하거나,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법, 시행령, 규칙, 통칙에 걸쳐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재편
- 과세소득 산정체계 등 법령의 체계적 재정비
- 주요 통칙규정의 법령화, 과세근거·용어의 명확화

- 주민세 및 목적세제도 폐지에 따른 세율체계 조정
- 소득할 주민세(법인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의 폐지 및 본세 흡수에 따른 법인세율 체계 조정

현행	검토방안	
	「1안」	「2안」
○ 일반법인 : 17.6%, 30.8% (과표 1억 기준) - 법인세 : 16, 28%	○ 18%, 31%	○ 17.6%, 30.8%
- 주민세 : 1.6~2.8%(법인세액의 10%)	*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	* 현행 수준
○ 조합법인 : 13.2 ~ 16.4%	○ 15%	○ 13%(농협 등), 16%(기타)
- 법인세 : 12%	* 차등없이 평균수준	* 현행 수준 및 금년부터 2%p 인상을 감안
- 주민세 : 1.2%(법인세액의 10%)		
- 농특세 : 0%~3.2%(세율특별분의 20%) • 농·수·축·임업 등은 비과세 • 실험, 금고, 중소기업만 과세		

- 기금 등 조합(partnership)에 대한 과세체계 명확화
- 현행 집행예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조합을 도관(conduit)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직접 과세
- 또는 별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

- * 별도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방안 등 강구

- 기업회계와의 조정체계 보완
-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되
- *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등의 변경으로 과세의 법적 안정성이 부당히 침해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포괄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

- 가산세제도 개편
-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를 통합(20%)
- 무납부 가산세의 일률적 10% 가산세제도 폐지방안 검토
- * 다른 세목과 연계

- 대차대조표 공고제도 보완
- 소기업에 대하여는 공고의무를 폐지
- * 미공고 가산세 자동폐지

- 신고·납부·징수기한 개선
- 신고기한 : 결산확정 후 15(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은 30일) →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내로 통일
- 분납기간 : 30일(중소법인 45일) → 45일로 통일
- 미납부 법인세 징수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 2월

-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제도 도입방안 강구
- 합병·분할 등의 경우에 납세자가 미리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심사·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적립대상을 기부금 손비인정대상 단체에 한정
-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적립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강구
- * 수익사업소득의 50% → 폐지(조감법상 특례법인은 유지)
- 기한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세액 추징 등
-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익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과세로 전환하되,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허용

III. 중장기 검토과제

- 법인세율체계 개편검토
- 법인세율체계 개편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 단계에서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
- 세율체계를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와 같이 단일화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
- * 과표 1억원 이하 법인(16% 세율) : 전체법인의 86%
- * 법인세율조정 연혁 : 1991년 20, 34%, 1994년 18, 32%, 1995년 18, 30%, 1996년 16, 28%
- 현행 높은 세율(28%)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인하하기도 어려운 문제 등
- * OECD국가 중 터키(25%)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음.
- 따라서, 법인세율체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검토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를 법인세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 자산 수증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를 법인세 단일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적용대상 및 한도를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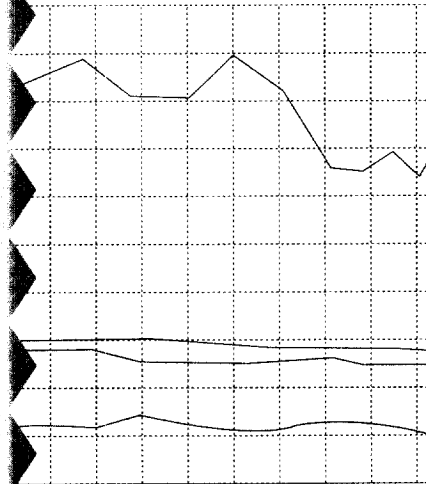
IV. 향후 추진일정

- 세계발전심의위원회 토의
- 일시 : 5월 14일(목), 16:00
- 장소 : Banker's Club(은행연합회 회관 16층)
- * 토의 후 만찬
- 공청회 개최
- 1998년 5월 28일(목)
- 입법 추진
-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 시행시기
-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다만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제도와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2000년부터 시행

재정 통계

국제비교자료 (II)

1.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개인소득
2. OECD 국가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3.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법인소득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법인소득세
5.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재산세 비
6. OECD 국가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
7.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
8.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비세 비중
9.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
10.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1.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22.6	32.4	32.8	34.1	35.2	41.0	40.8	39.3	37.9	37.2
멕시코	-	-	-	-	-	-	-	-	-	-
미국	31.7	36.6	34.6	39.1	37.8	37.7	36.7	36.1	36.3	35.7
호주	34.4	37.3	43.6	44.0	45.2	43.0	41.5	41.0	41.0	40.1
일본	21.7	21.5	23.9	24.3	24.7	26.8	26.9	25.5	25.6	22.8
뉴질랜드	39.4	42.7	54.3	61.6	59.8	46.2	44.9	44.8	45.0	44.8
오스트리아	20.0	20.7	21.6	23.2	22.9	21.0	21.7	21.5	21.6	19.6
벨기에	20.5	24.4	31.9	35.2	35.0	31.8	30.9	31.2	30.0	31.0
체코	-	-	-	-	-	-	-	-	9.0	11.2
덴마크	41.4	48.6	55.9	51.8	50.2	52.6	53.4	53.6	52.5	53.8
핀란드	33.4	39.3	44.2	38.8	41.7	38.5	37.1	39.1	35.7	37.0
프랑스	10.6	12.0	12.3	12.9	12.8	11.8	13.5	13.7	13.9	14.0
독일	26.0	26.7	30.0	29.6	28.7	27.6	27.3	28.0	27.1	26.5
그리스	6.8	9.7	8.9	14.9	13.9	13.9	12.3	10.2	9.3	10.5
헝가리	-	-	-	-	-	-	15.5	15.7	16.8	15.8
아이슬란드	19.5	19.9	20.2	23.1	19.5	26.5	26.4	26.5	29.6	30.8
아일랜드	16.7	18.3	25.2	32.0	31.3	31.9	32.3	32.0	32.0	31.5
이탈리아	10.9	10.9	15.2	23.1	26.7	26.3	26.4	26.8	27.1	25.4
룩셈부르크	24.9	24.1	27.9	27.3	25.6	23.5	22.1	21.5	20.8	21.5
네덜란드	27.7	26.8	27.1	26.3	19.4	24.7	26.1	24.8	25.4	20.3
노르웨이	39.6	35.2	31.5	28.0	22.3	26.2	26.1	25.5	25.5	26.3
폴란드	-	-	-	-	-	-	2.6	20.2	21.7	22.7
포르투갈	-	-	-	-	-	15.9	17.7	20.4	19.9	18.7
스페인	14.3	11.5	14.5	20.4	19.7	21.7	23.3	23.4	24.0	22.8
스웨덴	48.7	49.8	46.1	41.0	38.7	38.5	33.5	35.3	36.5	36.7
스위스	31.2	33.2	36.1	35.6	34.9	34.3	34.3	34.7	32.8	33.8
터키	24.8	27.0	32.9	43.5	27.5	26.8	28.7	27.9	27.1	23.9
영국	29.8	31.4	37.9	29.8	27.1	28.5	28.8	28.2	27.8	27.6
OECD Total	25.9	27.8	30.8	32.2	30.5	29.9	28.1	28.7	27.8	27.5
OECD America	27.1	34.5	33.7	36.6	36.5	39.3	38.8	37.7	37.1	36.4
OECD Pacific	31.8	33.8	40.6	43.3	43.3	38.7	37.8	37.1	37.2	35.9
OECD Europe	24.8	26.1	28.9	29.8	27.7	27.5	25.7	26.7	25.7	25.5
EU 15	23.7	25.3	28.5	29.0	28.1	27.2	27.1	27.3	26.9	26.5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2.OECD 국가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5.9	10.1	10.6	10.8	11.6	14.9	15.0	14.3	13.6	13.4
멕시코	-	-	-	-	-	-	-	-	-	-
미국	7.7	10.0	9.3	10.5	9.9	10.1	9.8	9.6	9.8	9.8
호주	8.0	9.0	12.0	12.5	13.6	13.2	12.1	11.8	11.8	12.0
일본	4.0	4.2	5.0	6.2	6.8	8.4	8.3	7.4	7.5	6.4
뉴질랜드	9.7	11.7	16.9	20.3	19.9	17.4	16.3	16.2	16.0	16.6
오스트리아	6.9	7.4	8.4	9.5	9.9	8.7	9.1	9.3	9.4	8.4
벨기에	6.4	8.7	13.3	15.6	16.7	14.3	13.9	14.0	13.7	14.5
체코	-	-	-	-	-	-	-	-	4.3	5.3
덴마크	12.4	19.6	23.1	23.5	24.6	25.6	26.1	26.4	26.4	27.7
핀란드	10.1	12.8	16.7	14.3	17.0	17.5	17.4	18.3	16.2	17.5
프랑스	3.7	4.2	4.5	5.4	5.7	5.2	5.9	6.0	6.1	6.2
독일	8.2	8.8	10.8	11.3	10.9	10.1	10.4	10.9	10.6	10.4
그리스	1.5	2.5	2.3	4.4	4.9	5.2	4.8	4.1	3.8	4.5
헝가리	-	-	-	-	-	-	6.6	6.7	7.1	6.5
아이슬란드	5.1	5.4	6.0	6.7	5.6	8.3	8.3	8.5	9.3	9.5
아일랜드	4.3	5.7	7.9	10.8	11.4	11.2	11.6	11.6	11.7	11.8
이탈리아	2.8	2.8	4.0	7.0	9.2	10.3	10.5	11.3	11.9	10.6
룩셈부르크	7.6	7.4	11.9	12.6	12.0	10.3	9.5	9.2	9.2	9.7
네덜란드	9.1	9.9	11.6	11.8	8.6	11.0	12.3	11.6	12.1	9.3
노르웨이	13.2	13.8	14.1	13.2	10.6	11.0	10.9	10.4	10.2	10.8
폴란드	-	-	-	-	-	-	1.0	7.7	9.2	9.8
포르투갈	-	-	-	-	-	4.9	5.6	6.8	6.3	6.2
스페인	2.1	1.9	2.8	4.9	5.7	7.5	8.1	8.4	8.4	8.1
스웨덴	17.1	19.8	20.0	20.0	19.4	21.4	18.0	18.0	18.3	18.7
스위스	6.5	7.9	10.7	11.0	11.2	10.8	10.7	11.1	10.9	11.5
터키	2.6	3.4	5.3	7.8	4.3	5.4	6.0	6.2	6.1	5.3
영국	9.1	11.6	13.5	10.5	10.3	10.4	10.3	9.9	9.3	9.4
OECD Total	7.1	8.6	10.5	11.3	11.3	11.4	10.7	11.0	10.7	10.7
OECD America	6.8	10.1	9.9	10.6	10.7	12.5	12.4	12.0	11.7	11.6
OECD Pacific	7.2	8.3	11.3	13.0	13.4	13.0	12.2	11.8	11.8	11.6
OECD Europe	7.1	8.5	10.4	11.1	11.0	11.0	10.3	10.8	10.5	10.5
EU 15	7.2	8.8	10.8	11.6	11.9	11.6	11.6	11.7	11.6	11.5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3.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법인소득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14.9	11.3	13.6	11.6	8.2	7.0	5.7	5.0	5.8	6.6
멕시코	-	-	-	-	-	-	-	-	-	-
미국	16.4	13.2	11.4	10.8	7.5	7.7	7.7	7.6	8.3	8.9
호주	16.3	17.0	12.4	12.2	9.4	14.1	14.4	14.4	12.8	14.1
일본	22.2	26.3	20.6	21.8	21.0	21.6	20.0	17.3	14.9	14.8
뉴질랜드	20.7	17.8	11.8	7.8	8.3	6.4	7.0	8.4	10.6	12.0
오스트리아	5.4	4.4	4.3	3.5	3.5	3.6	3.6	4.1	3.5	3.1
벨기에	6.2	6.8	7.2	5.7	5.4	5.4	5.3	4.7	5.3	6.0
체코	-	-	-	-	-	-	-	-	16.6	13.5
덴마크	4.5	2.6	3.1	3.2	4.9	3.2	3.3	3.3	4.3	3.7
핀란드	7.9	5.2	3.9	3.9	3.5	4.6	4.4	3.7	2.7	3.9
프랑스	5.3	6.3	5.2	5.1	4.5	5.3	4.5	3.5	3.4	3.7
독일	7.8	5.7	4.4	5.5	6.1	4.8	4.3	4.0	3.6	2.9
그리스	1.8	1.6	3.4	3.8	2.7	5.4	4.4	4.6	5.0	5.7
헝가리	-	-	-	-	-	-	12.2	5.8	4.1	4.7
아이슬란드	1.8	2.0	2.6	2.5	3.1	2.8	2.6	3.0	3.0	2.5
아일랜드	9.1	8.8	4.8	4.5	3.2	5.0	5.9	6.8	8.1	8.8
이탈리아	6.9	6.5	6.3	7.8	9.2	10.0	9.6	10.4	9.3	8.9
룩셈부르크	11.0	19.3	15.7	16.4	17.7	15.9	15.1	12.7	16.2	16.9
네덜란드	8.1	6.7	7.7	6.6	7.0	7.5	7.3	6.6	7.0	7.3
노르웨이	3.8	3.3	2.8	13.3	17.0	9.0	9.8	7.3	8.3	8.4
폴란드	-	-	-	-	-	-	19.7	12.0	10.0	7.9
포르투갈	-	-	-	-	-	8.0	8.9	8.1	7.2	7.1
스페인	9.2	8.2	6.9	5.1	5.2	8.8	7.7	6.4	5.7	4.8
스웨덴	6.1	4.4	4.3	2.5	3.5	3.1	3.5	2.9	4.4	5.4
스위스	7.1	7.6	7.7	5.8	6.0	6.7	6.4	6.4	5.8	5.8
터키	4.8	6.4	5.1	4.1	9.5	6.7	6.1	4.7	4.9	5.8
영국	7.1	9.1	6.7	8.3	12.5	10.8	9.2	7.4	7.2	8.0
OECD Total	8.9	8.7	7.5	7.5	7.8	7.6	8.0	7.0	7.3	7.5
OECD America	15.6	12.2	12.5	11.2	7.9	7.4	6.7	6.3	7.0	7.8
OECD Pacific	19.7	20.4	14.9	13.9	12.9	14.1	13.8	13.4	12.8	13.6
OECD Europe	6.3	6.4	5.7	6.0	6.9	6.7	7.3	6.1	6.6	6.6
EU 15	6.9	6.8	6.0	5.8	6.4	6.8	6.5	5.9	6.2	6.4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1998년 6월호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법인소득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3.9	3.5	4.4	3.7	2.7	2.6	2.1	1.8	2.1	2.4
멕시코	-	-	-	-	-	-	-	-	-	-
미국	4.0	3.6	3.0	2.9	2.0	2.1	2.1	2.0	2.2	2.5
호주	3.8	4.1	3.4	3.5	2.8	4.4	4.2	4.1	3.7	4.2
일본	4.1	5.2	4.3	5.5	5.8	6.8	6.2	5.0	4.3	4.1
뉴질랜드	5.1	4.9	3.7	2.6	2.8	2.4	2.5	3.0	3.8	4.4
오스트리아	1.9	1.6	1.7	1.5	1.5	1.5	1.5	1.8	1.5	1.3
벨기에	1.9	2.4	3.0	2.5	2.6	2.4	2.4	2.1	2.4	2.8
체코	-	-	-	-	-	-	-	-	7.9	6.4
덴마크	1.4	1.1	1.3	1.5	2.4	1.6	1.6	1.6	2.2	1.9
핀란드	2.4	1.7	1.5	1.4	1.4	2.1	2.1	1.7	1.2	1.9
프랑스	1.8	2.2	1.9	2.1	2.0	2.3	2.0	1.5	1.5	1.6
독일	2.5	1.9	1.6	2.1	2.3	1.8	1.6	1.6	1.4	1.1
그리스	0.4	0.4	0.9	1.1	1.0	2.0	1.7	1.9	2.1	2.4
헝가리	-	-	-	-	-	-	5.2	2.5	1.7	1.9
아이슬란드	0.5	0.5	0.8	0.7	0.9	0.9	0.8	1.0	0.9	0.8
아일랜드	2.3	2.7	1.5	1.5	1.2	1.7	2.1	2.5	3.0	3.3
이탈리아	1.8	1.7	1.7	2.4	3.2	3.9	3.8	4.4	4.1	3.7
룩셈부르크	3.4	6.0	6.7	7.6	8.3	6.9	6.5	5.4	7.2	7.6
네덜란드	2.6	2.5	3.3	3.0	3.1	3.4	3.4	3.1	3.3	3.3
노르웨이	1.3	1.3	1.3	6.2	8.1	3.8	4.1	3.0	3.3	3.5
폴란드	-	-	-	-	-	-	7.3	4.6	4.3	3.4
포르투갈	-	-	-	-	-	2.5	2.8	2.7	2.3	2.3
스페인	1.4	1.4	1.3	1.2	1.5	3.0	2.7	2.3	2.0	1.7
스웨덴	2.1	1.8	1.9	1.2	1.7	1.7	1.9	1.5	2.2	2.8
스위스	1.5	1.8	2.3	1.8	1.9	2.1	2.0	2.0	1.9	2.0
터키	0.5	0.8	0.8	0.7	1.5	1.3	1.3	1.0	1.1	1.3
영국	2.2	3.3	2.4	2.9	4.7	3.9	3.3	2.6	2.4	2.7
OECD Total	2.3	2.5	2.4	2.6	2.8	2.8	3.0	2.6	2.8	2.9
OECD America	3.9	3.6	3.7	3.3	2.3	2.3	2.1	1.9	2.1	2.4
OECD Pacific	4.3	4.7	3.8	3.9	3.8	4.5	4.3	4.1	3.9	4.3
OECD Europe	1.8	1.9	2.0	2.3	2.7	2.6	2.9	2.4	2.7	2.7
EU 15	2.0	2.2	2.2	2.3	2.6	2.7	2.6	2.4	2.6	2.7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5.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재산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14.3	12.8	9.5	9.1	9.3	10.0	10.5	11.1	11.3	11.0
멕시코	-	-	-	1.0	0.3	0.4	0.5	0.6	0.7	0.0
미국	15.9	14.2	13.9	10.7	10.7	11.4	11.8	12.0	11.9	12.0
호주	11.4	11.0	8.8	7.8	7.8	9.0	9.8	10.0	10.3	9.3
일본	8.1	7.6	9.1	8.2	9.7	9.1	9.4	10.5	11.1	11.5
뉴질랜드	11.5	10.4	9.2	7.9	7.4	6.8	6.4	5.9	5.6	5.3
오스트리아	4.0	3.7	3.1	2.9	2.4	2.7	2.7	2.7	2.6	1.6
벨기에	3.7	3.0	2.3	2.4	1.8	2.7	2.5	2.5	2.6	2.6
체코	-	-	-	-	-	-	-	-	1.1	1.2
덴마크	8.0	6.0	5.9	5.7	4.2	4.2	3.7	4.0	4.1	3.7
핀란드	4.0	2.2	1.9	1.9	2.7	2.4	2.3	2.2	2.8	2.5
프랑스	4.3	3.5	3.4	3.5	4.4	5.1	5.1	5.2	5.2	5.3
독일	5.8	4.9	3.9	3.3	3.0	3.4	2.9	2.7	2.7	2.8
그리스	9.7	9.3	9.7	4.6	2.7	4.6	3.8	4.3	3.5	3.3
헝가리	-	-	-	-	-	-	1.1	1.1	0.9	1.1
아이슬란드	4.0	4.5	5.1	6.3	7.3	8.5	8.8	9.1	9.5	9.4
아일랜드	15.1	12.2	9.7	5.3	4.0	4.7	4.6	4.4	4.2	4.5
이탈리아	7.2	6.0	3.3	3.7	2.5	2.3	2.5	3.5	5.4	5.4
룩셈부르크	6.2	6.6	5.1	5.6	5.5	8.5	7.7	7.7	7.7	7.6
네덜란드	4.4	3.3	2.4	3.6	3.5	3.7	3.6	3.6	3.8	4.1
노르웨이	3.1	2.4	2.3	1.7	1.9	2.9	2.9	2.9	2.7	2.7
폴란드	-	-	-	-	-	-	3.2	2.9	2.8	2.7
포르투갈	5.1	4.2	2.5	1.4	1.9	2.7	2.7	2.3	2.4	2.4
스페인	6.4	6.5	6.3	4.6	3.5	5.5	5.0	4.8	5.0	5.3
스웨덴	1.8	1.5	1.1	0.9	2.3	3.5	4.0	3.6	3.2	3.2
스위스	8.8	8.8	7.1	7.3	8.2	7.8	7.2	7.2	7.4	7.4
터키	10.5	10.8	6.9	5.4	4.6	2.3	2.2	2.0	2.1	8.1
영국	14.5	12.4	12.7	12.0	11.7	8.4	8.2	7.6	10.9	10.8
OECD Total	7.8	7.0	6.1	5.1	4.9	5.3	5.0	5.1	5.1	5.2
OECD America	15.1	13.5	11.7	6.9	6.8	7.3	7.6	7.9	8.0	7.7
OECD Pacific	10.4	9.7	9.1	8.0	8.3	8.3	8.5	8.8	9.0	8.7
OECD Europe	6.7	5.9	5.0	4.3	4.1	4.5	4.1	4.1	4.2	4.4
EU 15	6.7	5.7	4.9	4.1	3.8	4.3	4.1	4.1	4.4	4.3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6. OECD 국가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3.7	4.0	3.1	2.9	3.1	3.6	3.9	4.1	4.1	4.0
멕시코	-	-	-	0.2	0.1	0.1	0.1	0.1	0.1	0.0
미국	3.9	3.9	3.7	2.9	2.8	3.0	3.2	3.2	3.2	3.3
호주	2.7	2.7	2.4	2.2	2.4	2.8	2.8	2.9	3.0	2.8
일본	1.5	1.5	1.9	2.1	2.7	2.8	2.9	3.1	3.2	3.2
뉴질랜드	2.8	2.8	2.9	2.6	2.5	2.6	2.3	2.2	2.0	2.0
오스트리아	1.4	1.3	1.2	1.2	1.1	1.1	1.1	1.2	1.1	0.7
벨기에	1.2	1.1	1.0	1.0	0.9	1.2	1.1	1.1	1.2	1.2
체코	-	-	-	-	-	-	-	-	0.5	0.6
덴마크	2.4	2.4	2.4	2.6	2.1	2.1	1.8	2.0	2.1	1.9
핀란드	1.2	0.7	0.7	0.7	1.1	1.1	1.1	1.0	1.3	1.2
프랑스	1.5	1.2	1.3	1.5	2.0	2.3	2.2	2.3	2.3	2.3
독일	1.8	1.6	1.4	1.3	1.2	1.2	1.1	1.1	1.1	1.1
그리스	2.1	2.3	2.5	1.3	0.9	1.7	1.5	1.8	1.5	1.4
헝가리	-	-	-	-	-	-	0.5	0.5	0.4	0.5
아이슬란드	1.0	1.2	1.5	1.8	2.1	2.7	2.8	2.9	3.0	2.9
아일랜드	3.9	3.8	3.0	1.8	1.5	1.6	1.7	1.6	1.5	1.7
이탈리아	1.8	1.6	0.9	1.1	0.9	0.9	1.0	1.5	2.4	2.3
룩셈부르크	1.9	2.0	2.2	2.6	2.6	3.7	3.3	3.3	3.4	3.4
네덜란드	1.4	1.2	1.0	1.6	1.5	1.6	1.7	1.7	1.8	1.9
노르웨이	1.0	0.9	1.0	0.8	0.9	1.2	1.2	1.2	1.1	1.1
폴란드	-	-	-	-	-	-	1.2	1.1	1.2	1.2
포르투갈	0.8	0.9	0.5	0.4	0.5	0.8	0.9	0.8	0.8	0.8
스페인	0.9	1.1	1.2	1.1	1.0	1.9	1.7	1.7	1.8	1.9
스웨덴	0.6	0.6	0.5	0.5	1.2	2.0	2.2	1.8	1.6	1.6
스위스	1.8	2.1	2.1	2.2	2.6	2.5	2.2	2.3	2.4	2.5
터키	1.1	1.4	1.1	1.0	0.7	0.5	0.5	0.5	0.5	1.8
영국	4.4	4.6	4.5	4.2	4.4	3.1	2.9	2.7	3.6	3.7
OECD Total	2.0	2.0	1.8	1.7	1.7	1.9	1.8	1.8	1.9	1.9
OECD America	3.8	3.9	3.4	2.0	2.0	2.3	2.4	2.5	2.5	2.4
OECD Pacific	2.3	2.3	2.4	2.3	2.5	2.7	2.7	2.7	2.7	2.7
OECD Europe	1.7	1.7	1.6	1.5	1.5	1.7	1.6	1.6	1.7	1.7
EU 15	1.8	1.8	1.6	1.5	1.5	1.8	1.7	1.7	1.8	1.8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7.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40.5	31.7	32.0	32.6	31.8	25.9	25.7	26.2	26.6	26.3
멕시코	-	-	-	50.4	64.0	55.4	54.0	50.7	46.8	47.7
미국	22.8	20.0	19.5	17.6	18.8	17.3	17.7	18.0	18.1	17.9
호주	34.7	32.0	29.3	31.1	32.8	27.8	27.8	28.5	29.8	29.7
일본	26.2	22.4	17.3	16.3	14.0	13.2	13.5	14.1	14.4	15.5
뉴질랜드	27.9	27.2	24.2	22.3	23.1	33.6	35.4	35.6	34.3	33.7
오스트리아	37.4	37.4	34.5	31.5	32.6	31.5	30.7	30.2	29.3	30.9
벨기에	37.2	35.1	26.4	26.2	25.2	26.1	26.2	26.2	26.4	26.7
체코	-	-	-	-	-	-	-	-	33.5	33.6
덴마크	40.6	38.8	33.6	37.4	34.2	33.6	33.3	32.5	31.4	32.0
핀란드	42.6	39.7	32.4	35.7	34.0	32.6	31.8	31.6	32.2	30.8
프랑스	38.4	38.1	33.3	30.4	29.7	28.4	27.2	26.9	26.7	27.1
독일	33.0	31.8	26.9	27.1	25.7	26.7	26.9	26.9	27.8	28.7
그리스	48.8	48.2	46.8	41.2	42.7	44.0	44.6	45.8	43.9	41.0
헝가리	-	-	-	-	-	-	35.2	38.8	39.3	40.2
아이슬란드	62.7	61.3	63.0	59.9	61.1	51.5	51.4	50.0	49.8	49.2
아일랜드	52.6	52.4	46.5	43.7	44.4	42.3	40.7	40.2	38.3	39.1
이탈리아	39.5	38.7	29.4	26.5	25.4	28.0	28.1	27.1	25.9	28.3
룩셈부르크	24.7	20.5	20.8	21.0	24.3	24.8	26.8	28.5	27.3	27.4
네덜란드	28.6	27.8	24.2	25.2	25.6	26.4	25.3	25.7	25.2	25.8
노르웨이	41.2	42.8	37.7	35.4	37.5	35.6	35.1	37.4	38.4	38.4
폴란드	-	-	-	-	-	-	26.3	30.3	34.2	35.6
포르투갈	44.2	44.6	40.7	44.9	42.8	43.8	42.0	43.0	42.6	44.6
스페인	40.8	35.9	24.2	20.7	28.7	28.4	28.4	28.3	26.9	27.9
스웨덴	31.2	28.2	24.3	24.0	26.6	25.0	26.4	25.9	27.2	25.8
스위스	30.5	26.9	19.9	20.4	18.9	18.3	17.9	17.1	16.7	16.3
터키	54.0	49.4	41.3	25.6	36.0	27.9	29.3	29.8	31.8	37.1
영국	33.0	28.8	25.4	29.2	30.7	30.9	32.6	34.5	35.3	35.3
OECD Total	38.0	35.8	31.4	31.1	32.4	31.2	31.1	31.5	31.4	31.9
OECD America	31.6	25.8	25.8	33.5	38.2	32.9	32.5	31.7	30.5	30.7
OECD Pacific	29.6	27.2	23.6	23.2	23.3	24.9	25.6	26.1	26.2	26.3
OECD Europe	40.1	38.2	33.2	31.9	33.0	31.9	31.7	32.2	32.3	32.8
EU 15	38.2	36.4	31.3	31.0	31.5	31.5	31.4	31.6	31.1	31.4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8.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비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10.5	9.9	10.4	10.3	10.5	9.4	9.5	9.5	9.5	9.5
멕시코	-	-	-	8.8	11.7	10.3	10.2	9.8	9.2	9.0
미국	5.5	5.5	5.2	4.7	4.9	4.6	4.7	4.8	4.9	5.0
호주	8.1	7.7	8.1	8.8	9.9	8.6	8.1	8.2	8.6	8.9
일본	4.8	4.4	3.6	4.2	3.9	4.1	4.1	4.1	4.2	4.3
뉴질랜드	6.9	7.5	7.5	7.3	7.7	12.6	12.8	12.9	12.2	12.5
오스트리아	13.0	13.3	13.3	13.0	14.0	13.0	12.8	13.1	12.7	13.2
벨기에	11.6	12.5	11.0	11.6	12.0	11.7	11.8	11.7	12.1	12.5
체코	-	-	-	-	-	-	-	-	16.0	15.9
덴마크	12.1	15.7	13.9	17.0	16.8	16.4	16.2	16.0	15.8	16.5
핀란드	12.9	12.9	12.2	13.2	13.9	14.8	14.9	14.8	14.6	14.5
프랑스	13.2	13.4	12.3	12.7	13.2	12.4	11.9	11.8	11.7	12.0
독일	10.4	10.5	9.7	10.3	9.8	9.8	10.3	10.5	10.9	11.3
그리스	10.7	12.2	11.9	12.1	15.0	16.5	17.4	18.7	18.1	17.4
헝가리	-	-	-	-	-	-	14.9	16.4	16.5	16.5
아이슬란드	16.4	16.6	18.6	17.5	17.4	16.2	16.1	16.1	15.6	15.2
아일랜드	13.6	16.3	14.6	14.8	16.2	14.9	14.6	14.5	13.9	14.7
이탈리아	10.1	10.1	7.7	8.0	8.8	11.0	11.1	11.4	11.3	11.8
룩셈부르크	7.6	6.3	8.9	9.7	11.4	10.8	11.5	12.1	12.1	12.3
네덜란드	9.4	10.3	10.4	11.4	11.3	11.8	12.0	12.0	12.0	11.9
노르웨이	13.7	16.8	16.9	16.7	17.8	14.9	14.7	15.3	15.4	15.8
폴란드	-	-	-	-	-	-	9.8	11.6	14.5	15.4
포르투갈	7.2	9.1	8.9	11.3	11.9	13.6	13.3	14.3	13.4	14.7
스페인	6.0	6.1	4.7	5.0	8.3	9.8	9.8	10.2	9.4	10.0
스웨덴	10.9	11.2	10.6	11.7	13.3	13.9	14.2	13.2	13.6	13.2
스위스	6.3	6.4	5.9	6.3	6.1	5.8	5.6	5.4	5.5	5.5
터키	5.7	6.2	6.6	4.6	5.6	5.6	6.1	6.7	7.2	8.3
영국	10.0	10.6	9.0	10.3	11.7	11.2	11.7	12.1	11.8	12.0
OECD Total	9.9	10.5	10.1	10.5	11.3	11.3	11.5	11.8	11.9	12.1
OECD America	8.0	7.7	7.8	7.9	9.0	8.1	8.1	8.1	7.9	7.8
OECD Pacific	6.6	6.5	6.4	6.8	7.1	8.4	8.4	8.4	8.3	8.6
OECD Europe	10.6	11.4	10.9	11.4	12.3	12.3	12.4	12.8	12.9	13.2
EU 15	10.6	11.4	10.6	11.5	12.5	12.8	12.9	13.1	12.9	13.2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9.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비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5.6	9.7	10.0	10.5	13.5	14.3	15.4	16.4	16.5	16.9
멕시코	-	-	-	15.8	12.4	14.4	15.1	15.9	17.6	19.6
미국	13.3	16.1	20.5	21.9	25.2	25.8	26.1	26.2	25.5	25.5
호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본	21.8	22.3	29.0	29.1	30.3	29.0	30.0	32.3	33.6	35.1
뉴질랜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오스트리아	24.9	25.4	27.6	30.9	31.8	32.9	32.7	33.0	34.0	35.1
벨기에	31.4	30.5	31.9	30.4	32.4	33.8	34.9	35.2	35.3	33.2
체코	-	-	-	-	-	-	-	-	38.3	40.1
덴마크	5.4	4.0	1.3	1.8	3.8	3.1	3.0	3.1	3.2	3.2
핀란드	6.8	8.9	15.1	19.4	17.4	21.7	24.2	23.2	26.4	25.6
프랑스	34.2	36.3	40.6	42.7	43.3	44.1	43.8	44.5	44.6	43.4
독일	26.8	30.3	34.0	34.3	36.5	37.5	38.6	38.4	38.8	39.1
그리스	31.6	30.0	29.5	32.9	35.6	31.1	31.7	31.1	33.8	34.6
헝가리	-	-	-	-	-	-	31.8	34.7	35.4	34.4
아이슬란드	8.1	8.3	2.7	2.2	2.4	3.2	7.0	7.9	8.0	8.1
아일랜드	6.5	8.2	13.8	14.3	14.8	14.8	15.1	15.3	15.4	14.5
이탈리아	34.2	37.8	45.9	38.0	34.7	32.9	33.0	31.6	31.4	31.2
룩셈부르크	32.3	28.6	29.5	29.1	26.3	27.3	28.3	29.6	28.0	26.6
네덜란드	30.8	35.1	38.4	38.1	44.3	37.4	37.3	38.8	38.2	42.1
노르웨이	11.9	16.1	24.8	21.0	20.6	26.3	26.1	26.9	25.1	24.1
폴란드	-	-	-	-	-	-	31.4	29.7	29.2	29.6
포르투갈	21.9	23.9	34.6	29.5	25.9	27.2	27.1	25.4	26.8	26.3
스페인	28.3	37.4	47.5	48.6	41.3	35.4	35.6	36.6	37.9	38.6
스웨덴	12.1	14.9	19.5	28.8	25.0	27.2	29.1	29.4	27.3	27.2
스위스	22.5	23.4	29.2	30.9	32.0	32.9	34.2	34.6	37.4	36.6
터키	5.9	6.3	9.5	14.0	14.3	19.7	19.6	20.4	19.7	15.8
영국	15.4	13.9	17.4	16.6	17.9	17.1	17.4	18.1	17.9	18.0
OECD Total	18.0	19.5	23.0	23.2	23.3	23.6	24.8	25.1	25.9	25.9
OECD America	9.4	12.9	15.3	16.1	17.0	18.2	18.9	19.5	19.9	20.7
OECD Pacific	7.3	7.4	9.7	9.7	10.1	9.7	10.0	10.8	11.2	11.7
OECD Europe	20.6	22.1	25.9	26.5	26.3	26.6	27.7	28.0	28.7	28.5
EU 15	22.8	24.4	28.4	29.0	28.7	28.2	28.8	28.9	29.3	29.2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10.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1.4	3.0	3.3	3.3	4.5	5.2	5.7	6.0	5.9	6.1
멕시코	-	-	-	2.8	2.3	2.7	2.8	3.1	3.5	3.7
미국	3.2	4.4	5.5	5.9	6.6	6.9	7.0	7.0	6.9	7.0
호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본	4.0	4.4	6.1	7.4	8.4	9.1	9.3	9.4	9.8	9.8
뉴질랜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오스트리아	8.6	9.1	10.7	12.7	13.7	13.6	13.7	14.3	14.8	15.0
벨기에	9.8	10.9	13.3	13.5	15.4	15.2	15.6	15.8	16.1	15.5
체코	-	-	-	-	-	-	-	-	18.3	18.9
덴마크	1.6	1.6	0.5	0.8	1.9	1.5	1.5	1.5	1.6	1.6
핀란드	2.1	2.9	5.7	7.2	7.1	9.9	11.3	10.9	12.0	12.1
프랑스	11.8	12.7	15.0	17.8	19.3	19.3	19.2	19.4	19.6	19.1
독일	8.5	10.0	12.2	13.1	13.9	13.7	14.7	15.0	15.2	15.4
그리스	6.9	7.6	7.5	9.7	12.5	11.7	12.4	12.7	13.9	14.7
헝가리	-	-	-	-	-	-	13.5	14.7	14.9	14.1
아이슬란드	2.1	2.2	0.8	0.6	0.7	1.0	2.2	2.5	2.5	2.5
아일랜드	1.7	2.6	4.3	4.8	5.4	5.2	5.4	5.5	5.6	5.4
이탈리아	8.7	9.9	12.0	11.5	12.0	12.9	13.1	13.3	13.8	13.0
룩셈부르크	9.9	8.8	12.6	13.5	12.3	11.9	12.1	12.6	12.4	12.0
네덜란드	10.1	13.0	16.5	17.1	19.5	16.7	17.6	18.2	18.2	19.3
노르웨이	4.0	6.3	11.1	9.9	9.8	11.0	10.9	11.0	10.1	9.9
폴란드	-	-	-	-	-	-	11.7	11.3	12.4	12.8
포르투갈	3.5	4.8	7.5	7.5	7.2	8.4	8.6	8.5	8.4	8.7
스페인	4.2	6.3	9.3	11.7	11.9	12.2	12.4	13.2	13.2	13.8
스웨덴	4.2	5.9	8.5	14.1	12.5	15.1	15.6	15.0	13.7	13.9
스위스	4.7	5.6	8.6	9.5	10.3	10.4	10.7	11.0	12.4	12.4
터키	0.6	0.8	1.5	2.5	2.2	3.9	4.1	4.6	4.5	3.5
영국	4.7	5.1	6.2	5.8	6.8	6.2	6.2	6.3	6.0	6.1
OECD Total	4.8	5.8	7.4	8.1	8.6	8.9	9.5	9.7	10.2	10.2
OECD America	2.3	3.7	4.4	4.0	4.4	4.9	5.2	5.3	5.4	5.6
OECD Pacific	1.3	1.5	2.0	2.5	2.8	3.0	3.1	3.1	3.3	3.3
OECD Europe	5.7	6.6	8.6	9.6	10.2	10.5	11.1	11.3	11.8	11.8
EU 15	6.4	7.4	9.5	10.7	11.4	11.6	12.0	12.1	12.3	12.4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